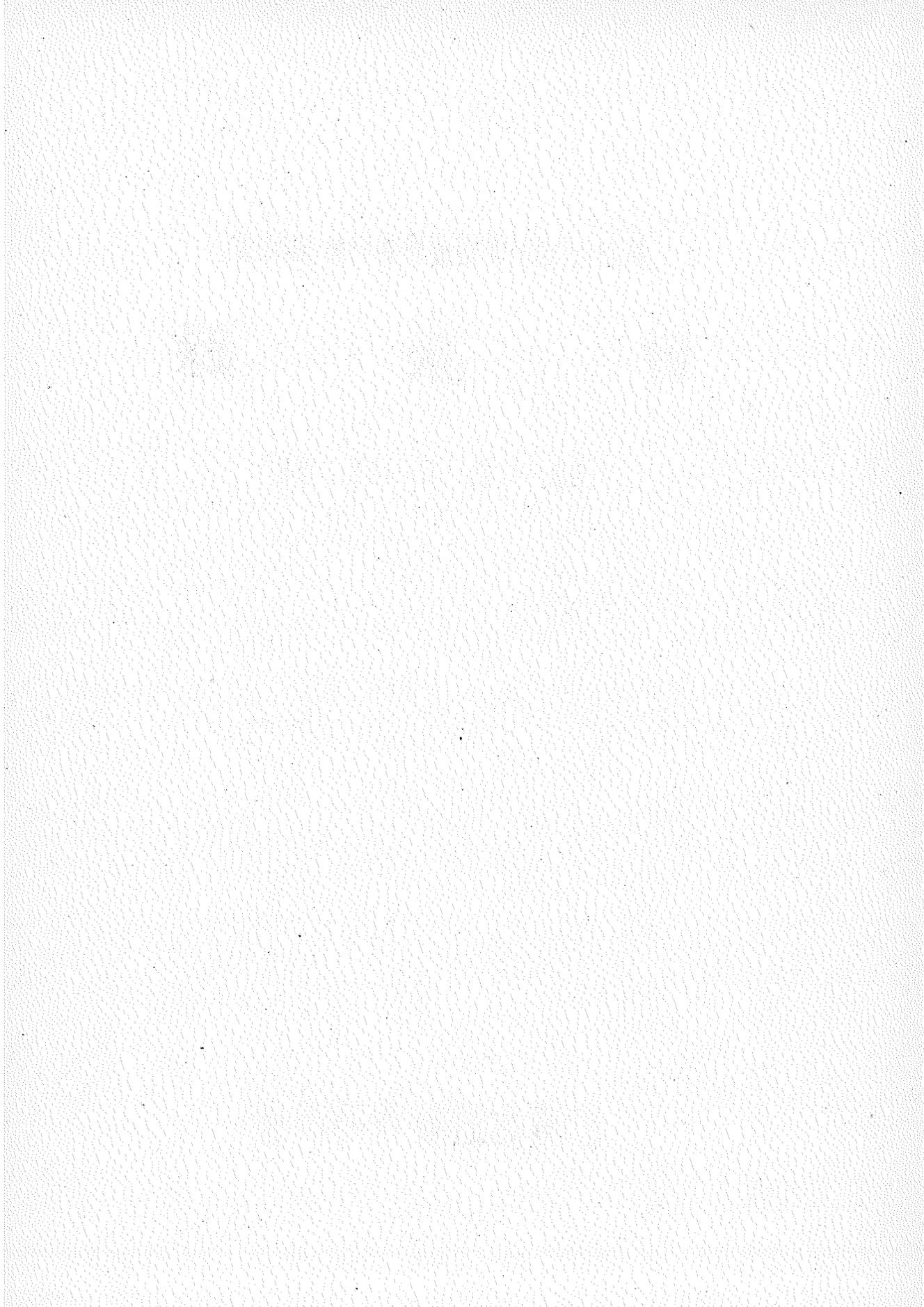


第1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2. 12. 8~12. 1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2. 12. 8~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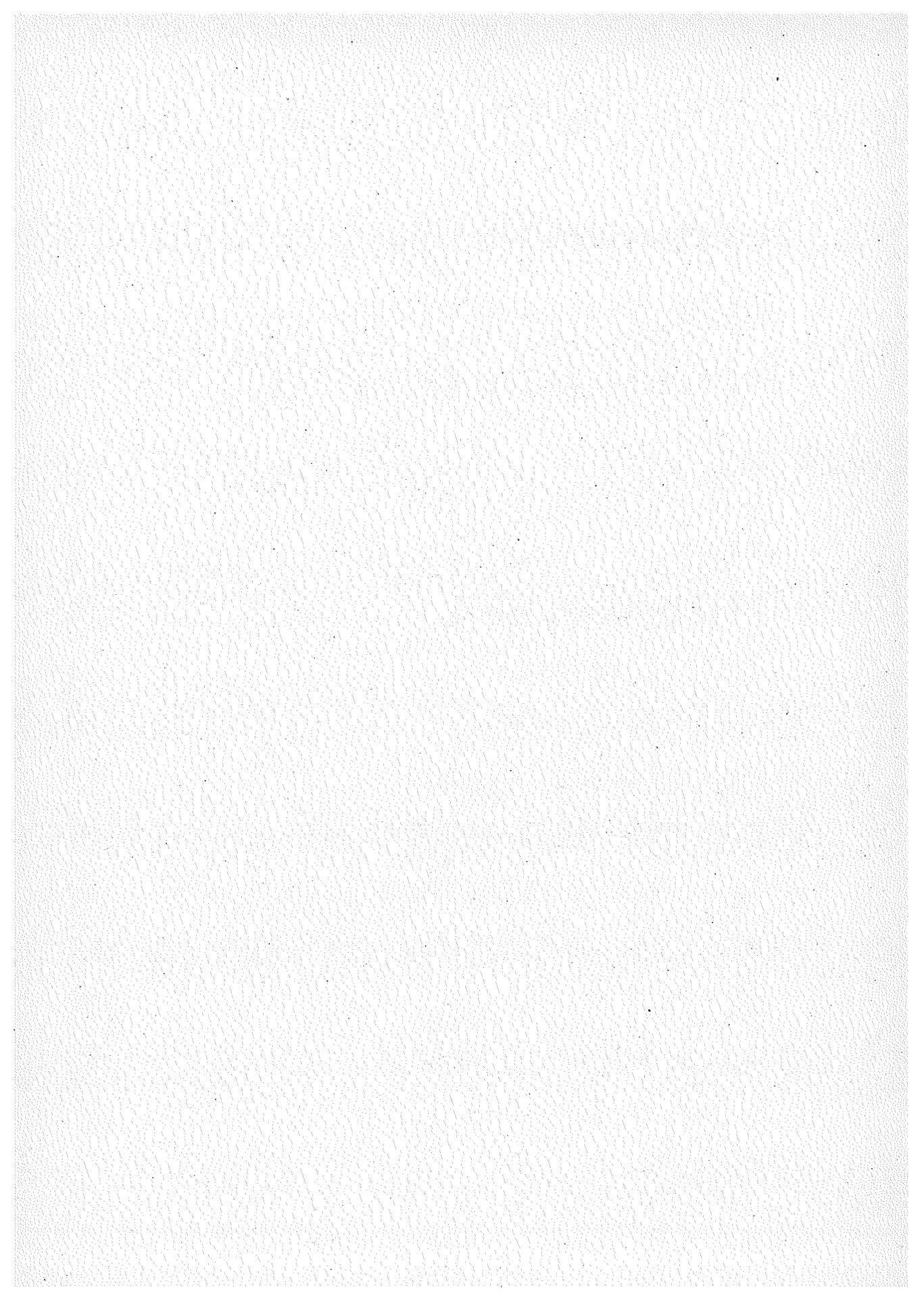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
3.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9

※ 부 록

가)	의사일정안.....	75
나)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7
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5
라)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5
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추가분).....	131
바)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37
사)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139
아)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1
자)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155
차)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요약).....	179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12월 8일 (화요일) 14시 30분

의사일정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기연장의 건
(이상일위원 외 3인 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혁풍위원외 3인 발의)
4. '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7.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8.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30분 개회)

● 의사과장 이영규

지금부터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
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
세)

.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14시 32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먼저 금일의 임시회 소집 및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이근수 외 세분 위원님
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30
일 교육위원회 공고 제 92-14호로 공
고 되었습니다.

저번 제17회 의결안건 처리결과입
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11월 20일날 이송하였
습니다.

세번째, 제84회 도의회 임시회 의
결 조례안 공포결과입니다.

11월 27일 충청북도 도보에 세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효력을 발생하
게 되었습니다.

세건의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
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
이상 세건입니다.

금회 교육위원회 처리안건을 보고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1월30일 권
혁풍위원님 외 세분 위원님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12월 8일 이상일위원님 외 세분 위
원님으로부터 제18회 임시회 회기 연
장의 건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일 집행청으로부터 충
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
되었고, 의안을 이미 배포해 드린 후
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추가 제
출되어서 오늘 회의장에서 배포해 드
린 두개의 안건이 있습니다.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
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추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4시 35분)

2.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회기연장의
건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
린 바와 같이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는 12월8일부터 12월12일
까지 5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교육행정에 관
한 질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의
사과장의 보고에서도 말씀 들으셨듯
이, 이상일위원 외 3인으로부터 '93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현장확인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
하여, 회기를 3일간 연장하자는 서면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기결정의 건 외에 회기연
장의 건도 처리하여야 합니다만, 위

원여러분 모두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내용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두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계획된 5일간에 3일을 연장하여,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기는 12월 8일 개최하고, 3일은 연장하여 1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변경된 의사일정은 다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된 "의사일정(안)" 참조)

(14시 37분)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인 권혁풍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사회대로 나옴)

● 권혁풍 위원

권혁풍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92년 12월 19일 10시 30분으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초·중등교육국장 및 관리국장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4. '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7회 임시회시 이미 처

리하여 교육감에게 이송되어, 도의회 제출중에 있는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확정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국고로 직업교육 확충사업비가 급히 보조되었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본 회기에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내용이 간단하고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 예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바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92년 12월 3일 교육부장관으

로부터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992만원이 추가교부 결정되어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광산공업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증축비 1억 8,139만 5천원과, 중평공업고등학교 실험실습실 증축비 7,8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질의 있으십니까 ?

목적교부금이기 때문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각각 3,715억 3,755만5천원으로 원안

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5.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상세히 설명)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교육과정 개편 또는 학교 위치 이전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학교 명칭 또는 위치가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장확인 일정등을 고려할 때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6.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김영세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같은 내용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동일한 안전이므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5호 안전인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2월 2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의하게 된 것은 진천 만승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광혜원고등학교 운동장 일부가 도로 편입이 12월 30일 확정됨에 따라, 미리 의안을 배포해 드리지 못하고 추가로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물량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교육재산의 관리,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되겠으며, 변경내역은 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당초 물량에 163㎡ 증가한 17만 8,657.1㎡이고, 건물은 220㎡ 증가한 5만 9,178.02㎡이며, 공작물은 당초 물량과 같습니다.

처분으로는 토지가 당초 물량에 3,709㎡ 증가한 43만 4,061.8㎡이고, 건물은 143.8㎡ 증가한 3만 9,200.28㎡이며, 공작물은 당초 물량과 같습니다.

유·무상 사용허가는 물량 증감없이 당초와 같습니다.

셋째로, 제안근거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역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호 안건인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는 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사용허가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재산의 관리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의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이 되겠으며, 취득에 있어서 토지가 6만 9천 448㎡이고, 건물은 '93년도 시설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번 당초 계획에는 계상하지 않고, 계획 확정후 1/4분기 관리계획 변경분에 계상할 것입니다.

처분으로는 토지가 11만 3,091.9㎡이고, 건물은 2만 1,897.3㎡이며, 공작물은 23식입니다.

유상사용 허가에 있어서 토지가 52만 9,891.16㎡이고, 건물은 1만9천 229㎡이며, 무상사용 허가로는 토지가 8만 5,440㎡이며, 건물은 7,070.6㎡입니다.

셋째로, 제안근거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결도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8.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홍신희, 권혁풍,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p>으로 홍신회, 권혁풍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p> <p>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p>	<p>이상으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p> <p>(14시 59분 산회)</p>
--	--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회,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 2.
-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별첨 3.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당초) : 별첨 4.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추가분) : 별첨 5.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 예산(안) : 별첨 6.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 (안) : 별첨 7.
-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별첨 8.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12월 9일 (수요일)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 의 된 안 건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

하신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12월8일 도교육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후, 이에 따른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1분)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 의장 김영세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 순서는 의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교육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문내용은 운호학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운호학원내 서원대학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여러가지 경위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대책, 이런 것들 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고, 우리 충청북도의 관심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서원대학 문제가 강인호 이사장님의 갑작스런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야기가 됐고, 지금 현재 까지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사진영이 다시 구성이 된 명단을 접했습니다.

꼭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의 내용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수한 사학으로서, 우리 대학교육에 지대한 일익을 담당해 온 대학으로서, 충청북도의 전반에 걸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참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속히 잘 수습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교육이 정상화가 되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것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 야기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 또는 교수들의 학원측에 대한 반대양상, 이런 것이 지상을 통해서 나올 적에 우리 교육계는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느끼면서 이것이 좀더 빨리 수습이 되어야만 '93년도 학생 모집에 차질이 오질 않을텐데, 하는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양상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93년도 대학생 모집에 지대한 문제가 야기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진학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영동공업대학의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93학년도부터는 학생모집을 한다고 해서 영동군이나 가까운 지역에서는 기왕이면 공업대학을 보내려면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교사나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93학년도 학생모집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이러한 공업대학이 생긴다는 것은 영동군이나 옥천군에서는 상당히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모집이 잘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서 같이 말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간략하게 이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 질문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 다마는 연구원의 건물이 금년도에 다 완공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원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 이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잠깐 다음 질문하기 전에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팔질문·일팔답변으로 진행을 하겠는데, 사실은 집행청에서 오늘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날입니다.

실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대한 일정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 일정조차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또 오늘 입학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는 일언반구 아무 얘기가 없다가 오늘 아침 개의 10분전에

와서 "입학시험이 있으니 참작을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미 우리는 회의가 소집됐고, 교육위원님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은 합니다. 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참작해서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호학원 사태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호학원 산하에 다섯개 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공립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립학교를 재단의 기부채납 절차없이 공립화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알려주시고,

두번째는 운호학원의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9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에 중학교 2개교 12학급에 600명, 고등학교 2개교 18학급에 784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여기에 배정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학원 분위기도 저렇게 어수선하고, 또 선생님들이 부채 관계로 여러가지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면학분위가 잘 조성이 되겠느냐, 그런 어수선한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입학거부 등의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은, 연구학교 활동과정 및 성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에서부터 '92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도내에는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그리고 도지정 시범학교 등 많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 연구학교하고 교육청 지정 시범 학교의 연구 주제를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그 성과를 간략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및 도지정 시범학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월달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세군대를 다니면서 연구 발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연구발표 하는 것을 보고서 대단히 많은 것을 저도 배웠고, 참 이렇게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러 학교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여고에 갔더니 "향토사료의 활용을 통한 역사의식 신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부 지정 역사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돼서 2년차에 걸쳐서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주·증원 지방의 향토사료를 역

사과 수업에 활용하여 향토사를 지도함으로써 향토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줄 목적으로 추진된 이 연구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보고서" 한 권과 부록으로 "충주의 역사", "충주의 고적답사"라고 하는 두 권의 향토사료집이 발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와 부록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충주 MBC에서도 두번씩이나 보도를 했고, 지역 유자들중 그 책을 받아본 사람들은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좀더 구해볼 수 없느냐 하는 문의를 학교에도 하고, 저에게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결과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또 다른 학교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두번째로 충주중학교 연구 발표를 견학 했습니다.

그 제목이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이라는 주제로 과학과 평가방법 연구보고회를 지난 10월 15일 가졌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도 사고력과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당시 임석을 한 교육부의 장학관이나, 타 시·도에서 온 연구담당자, 실무 교사들도 참으로 훌륭한 연구 발표라고 하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남한강국민학교에 가봤습니다.

남한강국민학교는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인데, 남한강국민학교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기초생활 영어의 듣고,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자료의 구안·적용"을 발표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오랫동안 고생한 흔적을 보았습니다.

특히, 외국어 조기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고, 특히 교사들이 편찬을 한 "영어 배움책" 초급·중급 두권의 지

도서가 나왔는데, 그 책이 영어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읽어봐도 참으로 이 교재가 국민학교 특활 영어를 위한 자료로서 널리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중·고별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 집행청에서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각급 학교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룩된 연구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반화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전 도내로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이재희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월학생 생활관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원월 생활관을 다녀온 학생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학생들은 생활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솔한 선생님이나 또는 학교장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또 실제로 원월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는 8월에 개관한 이후 그 운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제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월생활관의 두번째 문제는 2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승격이 안되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기에 100명이 들어가면 3박 4일에 소요되는 금액이 14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30기만 잡더라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재무실무 직원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금전사고의 문제도 예상이 되고, 또 하나 숙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도 예상을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명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독립기관으로 승격을 안하고 이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기관은 아니더라도 어떤 출장소 형태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체육선수 연계 지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제천중학교 탁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다는 이런 신문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홍광국민학교에서 육성한 선수를 제천중학교에 연계지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주의 모중학교에서 스카웃을 해서 지금 졸업생이 제천중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고, 또 기존의 제천중학교에 다니는 탁구선수들도 후배선수들이 오지 않으면 팀웍(Team work)이

안되기 때문에 타 시·도로 진출가는 동의서까지 교육청에서 발행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인체육을 무시하고 특정선수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그 선수 육성에 엄청난 시간이라든지 정성을 담았는데 이 추수지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소지에 타관할로 입학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묘하게 주민등록을 옮겨서, 사실 교권이 추락되는 그런 행위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 홍광국민학교 탁구선수에 대한 그간의 경위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내에서 육성되는 선수들은 그 지역에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강력히 존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스카우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앞으로의 대책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다음은 권혁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권혁풍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전에도 몇번 나왔던 것인데, 약간 시각이 다르고, 심도가 다르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중복된다는 오해를 살 요지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운영에 대하여 근거법규가 뭐냐, 어떤 법인화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도 교육청의 주장하고 교총의 주장이 상이합니다.

그 상이점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편의 주장이 타당성 있는 것인가, 물론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시겠지만, 좀더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학교 관리자의 선진지 시찰이 해마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습니다만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타당성도 좋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문제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냐, 그것이 교사들한테 어떤 갈등 요인을 주는 것은 아닌가, 어떤 균침이라는 차원에서 실제 아동과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좀더 그런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보다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물론 관리자가 여러가지 교육적인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지라든가 모든 것은 다 좋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자료를 보니까 자비로 간다거나 혹은 친목회비로 가는 지역교육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문제는 공금을 쓸 때 타당한 액수

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국립대 부속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교감자격 취득에 대해서입니다.

그 교감자격 취득 현황을 자료로 제가 받아 봤습니다.

법적 취지가 무엇이며, 근거규정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또,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오늘날에 비춰볼 때, 과거의 법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대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쭙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 물론 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취지라든가, 현황, 문제점, 대책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서 다섯번째 음성고등학교가 먼저 12월달 말쯤에 교육과정 편성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발표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서 볼 때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가 하는 연구 결과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지금 교육자치 시대라고 하는데 교육자치 시대가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한마디로 '지역사회 학교가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바로 지역사회 학교 운영이 잘 되는 것이 교육자치의 가장 빠른 구현방법이다, 즉 근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지역사회 학교 운영의 현황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각 교육청마다 시범적인 지역사회 운영 학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잘 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교육청별로 한 학교씩만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침묵)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이재희 위원

의장님,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 이재희 위원

사실 오늘이 고등학교 입학시험날인데, 한 지붕 밑에서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과 이렇게 손이 안맞아서는 대외적으로 어떤 명목이 서질 않습니다.

특히, 이번 수학능력 시험은 우리 충청북도뿐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사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오늘 집행청 간부를 모두 모셔놓고 질의·답변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어떤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잘못은 그만두고라도 오늘 오후 네시까지 시험이 계속되니까 저도 어떤 시험장에 가보고 싶은 심정인데, 집행청 간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이다음 15일날 듣도록 하고, 오늘은 집행청에서 일

선현장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동의를 제출합니다.

● 의장 김영세

지금 긴급동의입니까?

● 이재희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그러면 긴급동의를 3분의 1 이상 찬동이 있어야 합니다.

찬동 있으세요?

(위원석 잠시 침묵)

찬동이 없으면 부결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말씀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이재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도 바로 들어오기 전에 의장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한편으로는 불쾌한 생각이 들어지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와서 일단은 우리 질문 순서를 마친것 같습니다.

긴급동의 말씀에 제 자신은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 11시이고, 오늘 계속해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다 마친 후에 회의를 끝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의장 김영세

의장으로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안에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11시 05분)

● 의장 김영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김광수 부의장 발언하세요.

● 부의장 김광수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님께서서는 날마다 교육위원회에 나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통고받은 사실이라도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잘 알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답변하겠습니다.

주무부서는 중등교육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입학시험이 언제 있다는 절차조차 교육위원회에 누구 한명도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나 통보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단지 오늘 개의 10분전에 행정관리 담당관으로부터 오늘 입학시험이 있으니 주무부서가 여기에 해당이 되니 조정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의당 이런 행사가 있으면, 첫째 이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있던, 없던간에

이것을 상식적으로 통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의사일정이 잡혔을 적에 벌써 이것이 통보되어서 사전 조정을 요해야 할 것이고, 또 어저께 24시간 전이라도 와서 통보를 해줬으면 의당 우리가 여기에 협조를 해가지고 회의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해줬어야 할거예요.

그런데 회의 개의 10분전에 와서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이고, 또 이 회의를 대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 먼 제천·단양 같은데서 이미 여가에 와 계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충주에서 오신 분, 영동에서 오신 이런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는 예정대로 이미 소집이 된 것이니까 개의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서에 분명히 경고하여 두는 바입니다.

적어도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서는 심의 의결기관이요, 주민과 학부모의 대의기관인 이 교육

위원회라는 존재를 인식한다며는 이러한 중요한 행사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통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누구도 통보한 사실도 없고, 이런 회의 일정에 애로가 있고 조정을 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24시간 이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지, 개의 10분전에 와서 참말로 목전에 와가지고 이런 사항을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주민의 대표요심의 의결권을 가진 교육위원회를 경시하는 이런 풍조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고, 비단 이 뿐이 아니라 중등교육국에서는 이런 예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그 때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자꾸 거듭된다는 사항은 주무부서 사람들이 안일무사한 태도이며, 교육위원회를 경시한 태도로 봅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주무부서에서 잘했던 못했던 간에 우리의 수학능력 평가시험으로 처음 실시하는 입학시험 제도요 가장 중요한 교육행사의 하나가 지금 실시되고 있

는데, 우리가 주무부서의 관계직원들을 여기 불러서 질의 응답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시간을 끌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오늘 회의에 이왕 나오셨지만서도 이것으로서 회의를 오늘은 마치고 답변은 오는 15일 일정에서 하여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셔서, 아까 이재회위원께서 긴급동의한 것에 찬동하시는 위원들이 나오셔서 성립이 된다면 다음 일정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까 하는 제 참고 발언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장충호위원 말씀하세요.

● 장충호 위원

저는 찬성은 하지만서도 이런 일 같은 것은 그동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융화, 이것을 저희가 강조를 해왔는데 너무나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고,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

다.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이재회위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답변은 오는 15일날로 듣는것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죠 ?

(전위원 "찬성합니다.")

전원 찬성이 있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질의만 하고, 집행부서의 사정을 우리가 감안해서 답변은 15일날 듣기로 양해를 합니다마는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회의록에 꼭 기재하세요.

중등교육국에서는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이러한 소홀함, 다시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실시되는 현장 확인에 모든 위원님께서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회,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4명.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2년 12월 15일 (화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기타안건 처리

부의된 안건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기타안건 처리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을 들으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과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
터 답변을 들으신후, 보충질문·답변
의 순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1시 05분)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계속)

● 의장 김영세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본회의 질문에 대하
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의회에 :결특위
관계로 관리국 소관부터 듣기로 하고
다음에는 직제순에 따라서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해당 관계관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관리국 소관 질문·답변》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김광수 교육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운호학원 사태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해결 전망은 어떠한가와 더불어 이상
일 교육위원께서 질문하신 운호학원
사태에 따른 공립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운호학원 전이사장 강인
호씨가 2백억여원의 사채를 쓰고 미
국으로 도피함으로써 인해서 야기된 운
호학원 사태는 그후 지역사회에 많은
무리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마

는 그 후에 교육부에서 11월 5일자로 강석균씨외 7명의 임시 이사를 선임해서 지금 사태수습을 하고자 임시 이사들이 지금 조·석간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면서 학내 구성원이나 지역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태가 조만간 수습의 가닥이 잡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일 교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호학원 산하 5개 중·고등학교의 공립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일부언론에 보도된 경위와 진위 여부를 알려주고, 과연 사립학교를 재단의 기부채납 절차 없이도 공립화 할 수 있는지의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면 '92년 12월 13일 일부언론에 보도된 공립화 문제는 지역에 계신 원로 인사들이 기자들에게 소견을 제시한 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론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공립화 문제는 법인 이사회에서 설립 목적이나, 건학이념, 구성원이나 동창회, 학부모들의 의견, 또 운영자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교육용 기본재산을 기부채납한다면 감독청인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기부채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설립자가 과연 승복하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호학원 사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운호학원 임시 이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호학원 사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 수시로 교육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호학원 사태가 수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93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사항은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권혁풍위원께서 질

의하신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서는 근거 법규와 또 도 교육청 주장과 교원총연합회의 주장 내용은 무엇이며, 각 주장내용의 상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각 주장 내용의 타당성과 도교육청과 교원총연합회중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가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학교안전공제회 설립근거 법규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29일 주무 관청인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주장과 교원총연합회의 주장내용은 무엇이며, 각 주장내용의 상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형태에 있어서도 교육청은 시·도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교총의 주장은 전국

적으로 통합관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장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교총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보상대상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은 학생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총에서는 교원을 포함하는 것을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징수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은 학생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경비의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교총에서는 회비를 교원과 학교 설립자로부터 징수코자 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일정기금 조정시까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징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장 내용의 타당성과 도교육청과 교원총연합회중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선 도교육청의 타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학교안전

공제회를 해산하여 통합관리를 하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교육자치도 실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중앙에서 통합관리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또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을 하기가 중앙에서 통합할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고 특색있게 각 시·도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총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지역간 차등없이 균등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총주장대로 지금 법인을 해산하여 통합 운영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구운영에 따른 사무

경비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청의 경우는 재무과 직원이 겸직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사고는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 지급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면의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2년 4월에 시·도 교육감 회의시에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한 내용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대로 시·도별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낸 바가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 말씀하세요.

● 권혁풍 위원

그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비는 학생이 내게 되고, 회원은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학생의 돈을 가지고 적립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법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물론 있겠습니까만 지금 국장님 말처럼 "각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 특색을 살려서 도단위 별로 하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하는 답변이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교육자치법 13조의 "적립금"에 해당되지 않는가 해서, 이것을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예,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권혁풍 위원

그 교육자치법 13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립금"에 관한 것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금이 아닙니까, 이것은?

● 관리국장 김근학

적립금 관계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와 같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권혁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예, 됐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하시
기 바랍니다.

(11시 17분)

《초등교육국 소관 질문·답변》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
신 교육연구원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
은 언제 할 것이며, 연구원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냐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연구원 이전 시기 문제
입니다.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전을 해야 마
땅합니다라는 촉한기를 피해서 실시
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관장부서는 초등교육국 초
등장학과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연구학교의 연구 주제, 성과, 확산 일
반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첫번째로 연구학교 연구 주제 선정

방법과 연구 주제의 예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연구 주제의 선정은 지정부서에서
연구 과제를 받은 학교는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주제를 설정하게
되고, 주제 설정할 때에는 충청북도
교육연구원이 협조를 하게 됩니다.

연구 주제는 연구학교가 상당히 많
아서 그중에 예를 들어서 충주 지역
세 학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한강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생활영
어 지도자료의 구안·적용" 충주중학
교는 "과학적 사고력·탐구능력 신장
을 위한 중학교 과학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입니다.

충주여고는 "향토사료의 활용을 통
한 역사의식 신장 방안"으로 되어 있
습니다.

기타 연구학교에 대한 연구주제는
유인물을 드린 것으로 가름하고 이자
리에서 설명을 생략하면 어떻겠습니
까?

● 의장 김영세

예.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두번째는 연구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향토 학습자료의 교재와 새번째는 교육과정 개편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번째는 교육선진화에 기여했을뿐 아니라 교원의 자질향상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연구결과의 전도적 확산 일반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화 자료집을 충청북도 교육연구원에서 발간을 해가지고 전도내 학교에 배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한 내용들은 저희가 장학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예를 몇가지 들겠습니다.

첫번째로 남한강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 생활영어 배움책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제6차 교육과정 운영 대비 교재로써 저희들이 초급용, 중급용을 이미 인쇄에 회부하였습니다.

인쇄가 완료되면 도내 3학년이상의 각 학급에 한권씩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중학교의 과학 문제는 책자로 이미 배부가 되어 있고, 이 책자는 실험실습시에 하나의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여고의 "충주의 역사" "충주의 고적답사" 책은 이미 배부도 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발간하고자 하는 "충청정신문화의 기동" 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 발행시 그 책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충북 정신문화의 비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관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연구학교에서 회의도 개최하고, 행사도 실시를 하고, 이래서 중단없는 연구시범 운영을 함으로 해서 연구내용이 도내 모든 학교에 확산 일반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기타, 이분들이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출처, 두번째는 관리자 선진지 시찰이 교사들과의 갈등요인이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번째로 예산 출처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1일 만 6천원부터 거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만원 정도가 되고, 대개 1박 2일, 2박 3일을 실시했습니다.

1박 2일 할 때는 4만원정도 여비지출이 되고, 2박 3일 할 때는 6만원정도 여비가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와의 갈등요인이 아니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갈등요인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형평에 있어서 문제는 다소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사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실시 할 때에는 관리자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 위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진지 시찰로 땅굴 견학을 간다든지, 통일전망대를 간다든지 할 때에는 교사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교육활동에 있어 유공한 선생님들, 또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을 시·군 교육청에 따라서는 그분들의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군이나 단양군에서는 교장, 교감에 우선해서 선생님들에게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시찰중 획득된 정보나 우수 사례의 일반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균형을 유지하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선진지 시찰에 유

님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립대 부속 초·중·고 교사의 교감자격 취득에 대한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말씀은 첫째 교감자격 취득 현황, 두번째 법적근거 규정, 세번째는 타당성 여부, 대책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감자격 취득현황은 초등은 '90년, '91년 각각 2명씩, '92년에 4명 해서 근간에 8명이 자격취득을 했고, 중등은 '90년에 5명, '91년에 3명, '92년에 8명 해서 근간에 16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는 초등경우는 청주교육대학 부속에서 2명, 또 교원대 부속 월곡국민학교에서 2명 해서, '92년에 4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의 경우는 충대사대 부중·고가 있고, 또 교원대학 부속 미호중학교가 있고, 충대 교원대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각각 한명내지 두명씩을 하다보니까 '92년에 여덟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법적취지와 근

거규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에 보며는 교육부 직속기관 및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취득 선정도 따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근거규정은 교육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4조 연수대상자의 선발입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감자격 연수 선발대상자를 국립학교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대적 타당성 여부입니다.

첫째, 도내 국립 초·중등학교 교사가 교감자격 취득 강습 지명을 받기 때문에 기회가 축소된다는 일부 선생님들의 불만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명된 국립 교사의 경력이나 연령을 저희들이 공립학교에서 지명된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경력과 연령이 대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화 시대에

알맞도록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개선 방향을 두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교감자격 취득에 있어서 인사교류도 교육감님이 하고 본 도내에 근무하기 때문에, 교감자격 취득 강습 지명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또 하나 개선방향으로서는 저희들이 만들은 말입니다마는, 학점제 자격취득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정 자격은 1정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되면 누구든지 교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일정한 사람을 차출해서 강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부담으로 일정한 학점을 취득을 하고, 취득이 다 됐을 때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하면 교감 자격증을 교부하는 그런 제도로 앞으로

는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도 했고, 저희들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번째는 지역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학교의 시범학교 지정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나 학교는 이 문제가 아니라도 지역교육자치의 정신에 입각해서 도내의 초·중등 전 학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사항을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교육을 통한 학교, 가정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학교 교육시책, 시설 등을 지역사회에 홍보도 하고 해서 학교가 지역문화 센터의 기능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통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시범학교지정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학교지정 운영 문제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도교육청 지정 3개교를 계속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영동국민학교, 덕산중학교, 청주농고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한 데에는 단양 매포국민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학교가 지역교육자치 정신에 입각한 학교민주화를 위해서 다같이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범학교 운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주 흥덕국민학교에서는 주부시민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음성 대소국민학교는 동문회 교실을 운영을 하고 동호인 교실, 독서반 운영을 해서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동의 영동국민학교는 전통예절교실 운영, 사랑의 바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덕산중학교는 학부모 컴퓨터교실, 노인 게이트볼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농고는 산학협동체제 운영, 농업박물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제점과 대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지역문화 센터 기능이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어서 학교시설을 개방을 하고 이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학부모 의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통한 교육 2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부모 교육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학교가 지역교육자치의 정착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초등교육국 소관 질문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세요?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 권혁풍 위원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관리자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으니, 취지라든가, 효과라든가, 타당성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적인 면에서 조금 문

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해외연수를 교사위주로 하고, 유공교사라든가 이런 선진지 시찰을 주로 교사들 위주로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마는 교장, 교감 관리자의 선진지 시찰은 정기화 돼서 해마다 되고 있고, 기타 교사는 수시로 계획에 따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불균형 같은 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교장, 교감의 관리자들이 정보교환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사들과의 갈등 문제가 약간 미묘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해주어서 역시 교사가 교육의 주체다,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교사에게도 그런 균점권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골고루 돌아서 사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알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 다음에는 국립대 부속 초·중·고 교사의 교감자격에 관한 것인데, 이걸 아까 국장님께서도 일부 교사들의 불평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게 상당한 불평이 저변에 굉장히 확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별로 심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등학교는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92년도를 보며는 전체 교감자격 취득자는 28명인데, 그중에 8명이 국립대학 부속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도 보통 불균형이 아닌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충북대학에서 한분, 교원대에서 한분해서, 두분이 발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이 자료에는 연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력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찌 나와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또 그 규정은 물론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 인사는 취급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꼭 2명을 지정해야 된다는 법규가 있는지, 물론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꼭 2명을 지정하라는 법규정은 없다고 보는데, 해마다 증가가 되어서 작년보다 한 학교에 2명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명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것이 종래의 중앙집권적인 타성이 아직도 남아서 교육부에서 지방을 자꾸 잠식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충북대학하고 교원대학에서 한분씩 뽑았는데, 이분들은 충북대학이나 교원대학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기능이 뭔가 하는 몇가지를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권혁풍위원님께서만 드려서, 다른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충

북대학하고 교원대학에 있는 분들은 충북대학의 김홍식 선생님, 교원대학의 이기홍 선생님은 연령이나 경력이 거기에 썩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 곳의 연수원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도 분도 있고, 타도 분도 있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연령이나 경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왜 한 학교에서 2명씩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은 법이 제정이 되어서 강습을 많이 시키면, 또 적체가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적체라고 하는 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비현직율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장은 10%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장자격증을 갖고 아직 교장이 되는 많은 사람이 전체 교장의 10%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강습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감도 현재 교감자격증을 갖고 교

감이 되지 않은 사람의 15%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15%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차출을 하고 강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원대학이나 교육대학 부속 이런 곳의 직원수는 대개 1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감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감자격증도 없고, 당연히 직원수의 15%인 두 사람씩을 지명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좀 혜택이 가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국립이든, 공립이든 교사에 대해서 강습 취득의 지명 권한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이양해 줌으로 해서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중앙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교원대학에 있는, 또 충북대학에 있는 김홍식 선생님이나 이기홍 선생님의 기능이 뭐냐, 그러니까 연수원에 있기 때문에 연수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자격증을 갖지 않은

연구사들입니다.

● 권혁풍 위원

그 규정에는 두명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지금 법률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차출하는 지침입니다.

● 권혁풍 위원

그 증가가 되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물론 두명까지 할 수 있는데, 차차로 늘어났지요, 예를 들며는.....

● 권혁풍 위원

배가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또 세명이 될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까지 나와 있어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주교대부속은 과거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두명씩 언차로 나오다가 '92년에 월곡국민학교가 새로 교원대학의 부속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부속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또 거기도 두명으로 해서 네명이 되었고, 중등도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 권혁풍 위원

국장님의 지금 말씀에 문제점이 확실히 있다고 하시고, 그 차출권을 여러가지 연구하시면서 학점 문제라든가 혹은 교육감한테 그런 권한을 위임받도록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실현이 되어서 교육감이 우리 도내에 국·공립학교의 인사를 전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국립학교라고 해서 국립학교끼리만 인사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교감자격증을 따가지고 공립학교로 오면서도 거기에 또 특혜를 준다면, 이게 아마 누구든지 긍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은 하루빨리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93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교육자치를 내실화 하는

첫발이 바로 지역사회 학교의 실현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93년도 교육계획에 좀 더 적극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유념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초등교육국 소관 보충질문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시지요.

(11시 45분)

《중등교육국 소관 질문·답변》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중등교육국장 나세웅입니다.

우선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호학원 사태는 도내의 관심사항이며 도의회에서 거론 되었기에 질문하는 바, 문제가 지속될 경우 학생 진학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과 향후 대책은?" 해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대학은 후기 모집으로써 32개 학과에 인문계 680명, 자연계 360명,

예·체능계 215명 해서 1,145명을 모집한다고 하는 공고가 나와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 대학에 있어서의 모집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영동공업대학의 금년도 학생 선발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동 선발 계획이 예정대로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할 경우에 따른 학생지도 대책은?" 하셨는데 현재 영동공업대학 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공고된 바 없고, '94년도에 개교할 것을 목표로 해서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렸고, 다음에 역시 이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운호학원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항에 "현재 운호학원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상태에서 '9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2개 중학교 12학급 600명, 2개 고등학교 18학급 784명의 배정대상 학생과 학부모가 입학 을 거부하는 등의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청주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에 국민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4% 이상이 선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호고와 충북여고는 중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정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게 되어 있고, 또 청주여상은 8학급 384명 모집정원에 523명이 지원을 해서 139명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호학원의 중·고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월학생 생활관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8월 개원 이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는,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점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로서는 북부

지역의 예성여고 399명, 제천여고와 제천상고 두 학교를 합쳐서 870명, 단양고등학교 168명, 이렇게 해서 4개교 1,437명이 6개월동안 모든 수련을 마쳤습니다.

그 지도한 내용은 올바른 가정관 및 가치관, 부모에 대한 효도, 또한 윗분에 대한 공경심, 또는 전통예절, 생활예절, 가사의 중요성 인식에 교육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던진 결과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보완입니다.

앞으로 방송시설이나 벤치, 또는 운동기구나, 남자 화장실 설치등 이러한 시설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문제는 연차적으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개선점으로서는 지도교사 확보하고 조력자 배치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 개방운영에 있어

서의 내실보다는 앞으로는 실외교육에 대한 강화를 더 해서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시설 보완 및 확충에 대해서는 필요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해서 점차적으로 원월 생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기관으로 설립이 불가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바,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독립기관은 아니더라도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여 관계직원 책임하에 운영케 할 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연간 4-5천만원의 경비소요로 금전사고나 또는 학생 식중독 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독립기관이나 출장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말씀 올리고, 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해당학교의 육성회비에

실습비라고 해서 최소액, 그러니까 1인당 1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교통비하고, 실습비하고, 기타 비용이 포함이 돼서 이것을 육성회에 포함시켜 징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입소를 할 적에 서무과에서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금전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사고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생활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거기의 목표가 예절생활, 또는 가정생활 등이 중요하다는 또 한가지 목표는 거기에서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사실습, 요리실습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해서 염려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답변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체육선수 연계 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흥광국민학교 탁구선수 두명에 대한 질문인데요, 거기에 장병기라는 학생하고, 박길수라는 학생이 청주 봉명국민학교로 전학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현황은 학부형들 두분은 동일방직에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봉명국민학교의 6학년에 재학중이고 현재, 그래서 오후에는 봉명중학교에 가서 탁구부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동의서 발급에 대한 약속을 한 일이 있느냐?"하는데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홍광국민학교 동창회장과 학부형하고 해서 한 15명이 11월 초에 세번에 걸쳐서 집단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집단항의의 내용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부형을 설득해서 두 선수를 원상복귀 시켜 달라" 하는 것하고 두번째는 "장병기, 박길수 두 선수의 선수자격을 발탈해 달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제천이나 충북에서는 운동을 계속할 수 없으니 타

시·도로 진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조건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부형님과 그 학생들 두 학생을 제천으로 다시 가도록 교장선생님과 이야기가 돼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형님측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거주의 자유가 있어서 이사를 왔는데, 왜 나보고 또 가라고 하느냐, 절대 못간다." 이렇게 항의가 돼서 첫째번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두번째도 역시 충청북도의 선수는 충청북도에서 그런 시설이 좋고, 또 유능한 선수로서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면 이것은 법규상으로 봤을 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박탈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세번째 동의서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타 시·도로 전학을 간 후 운동을 계속하고자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선수 스카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스카웃의 문제점은 본도 선수를 타 시·도에 스카웃하여 문제가 되는 일이 간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같이 본도내에서의 문제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같은 도내에서의 진학은 학생과 학부모 의사와 특기자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도내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은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두번째,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별 지정 종목을 초·중·고등학교로 계열화 해서 현재도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연계지도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도중 김영세 의장 이석으로 김광수 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이동하여 의장직무 대행)

그 다음에는 권혁풍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일반계 고등학교의 실업계 고교 전환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며는 두가지로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있고, 두번째는 비진학 청소년의 직업기술 교육기회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것, 세번째는 산업발전에 따른 기능인력의 증가입니다.

또 지역적 차원으로 봤을 적에는 지역산업의 제기능 인력을 제공해 주고, 실업계 학교 지원자를 위한 수용능력을 확충해 주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순응한다고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일반계 고교에 대한 직업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하고 있고, 현황에 대해서는 본도는 '92년도 일반 52%, 실업이 48%입니다.

거기에다가 직업과정 운영교 15개교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일반 49%, 실업 51%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95년도까지는 그 실업계 50%의 비율속에서 공업계 비율이 45%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현재에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교과 지도교사의 과부족이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실험실습 시설의 확보가 좀 지연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써 해당 교과목 교사중에 우선 모자라는 과부족은 발탁을 해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 해서 그 분야로 발탁을 해서 채용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내의 특별실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취지가 아까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취지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본 도에는 15개교 2학년 22학급, 3학년 26학급, 계 48학급으로써 학생수는 2,242명입니다.

운영형태는 자체로 운영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운영은 상업계열은 학

교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업계열은 직업훈련원 등 또는 여러가지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업계열은 상업대요의 7개 교과에 50단원 이상 100단원 이하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업계열은 공업 입문의 6개 과목 역시 50단원 이상 100단원 이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중에 문제점은 대입 선호사상으로써 직업과정을 기피하는 것이 있고, 또 인문고등학교 안의 직업과정에 편입한 학생들의 생각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과정 운영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 대한 여러가지 다각적인 분야에 입각해서 진로교육 자료를 발간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는 직업선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업과정 운영 성과를 홍보해서 본인들이 앞으로 직업전선에 충분히 나갈수 있는 진로교육을 하고 있고, 또 상업계열은 상업분야에 대한 기능교육, 공업계열도 공업분야에 대

한 단순기능에 대한 기능훈련을 하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선 직업전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음성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연구 결과는?" 음성고등학교는 교육부 지정으로서 19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을 실시를 했습니다.

애당초는 2개년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그 때 당시에는 교육부에 서면 보고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상당히 내용이 훌륭하고 일반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차 3년차까지 연장을 해 가면서 연구지정 학교로 지명을 해서 '92년도에서 모든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간된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발언대에서 위원들께 책자를 보여주면서 답변 계속)

'91년 11월 20일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실천연구" 라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내용이 좋고, 충분히 이 책 한권만 읽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과정 운영의 선택을 한다고 하면 직업과정 운영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래서 "더 중요도있게 연구를 해주십사"해서 교육부에서 '92년도에 3년차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발간된 것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부록을 발간했고,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연구 개선"이라해서 중점과제는 "직업과정 운영 실천연구", 공통과제는 "교육과정 편성연구", 이렇게 해서 책자 두권을 발간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 있고, 앞으로 일반화의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중에 대개가 60%이상 지금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이나, 또는 지역적인 차원으로 봤을적에 실업계와 인문계의 비율이 50대 50, 그 중에서 또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지만 그래도 대학을 갈 형편이

못되는 학생들은 직업과정 운영교를 설치하여 그 학생들은 일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행하고 있는 직업과정 운영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로교재를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학생 자신의 적성, 능력 흥미등을 스스로 알게 되었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었다.

두번째가 올바른 진로 의식과 직업가치관 확립을 위한 진로지도 강화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모색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신장됐다.

그 다음에는 "직업과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사항 네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직업과정은 직업실정과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설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충분한 시설, 기자재 확보 및 우수 지도교사 배치등 지원체제가 강화돼야 겠다.

세번째가 각종 공공 직업훈련의 확충, 일반기업체의 사내 직업훈련원

활용, 사설학원을 내실화 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해야겠다.

네번째가 학교와 기업체, 학교와 공공 직업훈련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산학 협동체제의 강화 및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예산 지원을 더가일층 지원을 해야 겠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 이재희 위원

홍광국민학교 탁구선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2회에 걸쳐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다녀와서 그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현장에 가서는 충북선수가 이기기를 기원도 하고 박수를 보냈니

다마는 지금 홍광국민학교 학부형들이 농성을 일으키게 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교권을 추락시킨 일입니다.

전인교육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아주 하찮은 탁구선수 혹은 들으면 섭섭하다고 하려는지 모릅니다. 다마는 그 학생이 지금까지 스카우트 되기 전까지는 그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었는데, 그 학교 코치나 그 학교 교장의 얘기를 목살해 버리고 조금 나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그리로 가는 부형 그리로 따라가는 것을 과연 이렇게 우리가 목과하고 했을 것이냐, 무방비 상태로 있을 것이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학부형 스스로가 취직을 하고 이전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방직으로 알선을 하고 주택을 제공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같이 뛰는 학생들의 학부형이 원상복귀가 안되면 그 선수의

선수권을 박탈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같은 도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일선 시·군에서 앞으로의 체육선수의 저변확대라든지 체육선수 육성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독려를 할 것입니까?

지금 홍광국민학교의 탁구선수를 이어 받을 연계 학교가 없어서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다는 제천중학교 교장한테 탁구선수를 맡아 달라고 신신부탁을 해서 탁구종목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1년동안 착실하게 했습니다, 대외활동도 많고.

국민학교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겠거니 했는데, 이러한 동일방직 취업 알선이라든지 또는 주택 제공이라든지 이런 조건 제시를 봉명중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교권을 추락시키도록 유발시킨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문책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기로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이재희 위원

좋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어떻게 위원님들이 양해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시지요?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속 기록이나 녹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제가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3차에 걸쳐서 학부형님들이.....

(12시 13분)

(마이크 및 녹음기의 전원차단으로 속기 불능)

(12시 18분)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이런것이 비단 제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의 각 학교 단위로 아마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혁풍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과원 교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교사는 그렇게 부전공이라도 교사로 발탁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남은 교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며, 중전에 종합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그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직업반을 인문계 학교에 설치했을 때, 종합고등학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저희들 도에 종합고등학교는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타 도에는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타 도의 경우 경기도 같은 데는 많
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면 일종의 종합고등학교가 되
는 것이겠조 ?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그렇조.

그것도 구상해 볼 문제입니다만 이
것이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상으로 봤
을 적에 종합고등학교로 하면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도 아니고 인문계 고
등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사항에
있어서 지원 혜택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종고는 설치
를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과원교사는 어떻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과원교사는 저희들이 현재로서, 기
계과가 좀 부족합니다.

금년도에도 26명이 필요하여서 저

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20
일날 시행되는 신규교사 채용시험에
15명이 지원을 해서 현재 11명이 부
족한 실정에 있고, 작년에도 부족했
던 것을 중·고등학교에 기계과 자격
증을 가지고서 기술과 계통으로 가
게시는 선생님들을 발탁해서 발령을
내서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경력 자격자는 연수를 시켜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을 할 그런 계획
이고, 그 다음에 인문과 실업이 50대
50으로 될 경우에 공업계열은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인문계열은 남아 돌
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
간 교류에 있어서 경기도와 서울로
일반 전출을 시키는 방향, 이렇게 해
서 인원을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알았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감사합니다.

(12시 22분)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92년 5월 23일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12월까지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진단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행정관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로 나눔)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별첨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요약)" 참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인력진단 실시 결과의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진단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지역교육청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진단 실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92년 5월 20일부터 5일간 개최된 제10회 임시회에서 권혁풍위원님의 "인력감사의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정관리담당관의 답변이 있었고, 제11회 임시회시 권혁풍위원님이 "인력감사를 실시 할 것인가, 실시한다면 그 결과를 예의 주시 하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인력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준비중에 있다는 부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13회 임시회시 김광수 부의

장님의 "시·군교육청 일반직 인사담당자 개선 용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제12회, 제14회 임시회 및 제16회 정기회 제2차 감사소위원회에서 권혁풍위원님의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 대하여, 인력진단 실시 종료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진단 실시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교육청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6쪽의 일반직공무원 진단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3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교원 인사업무를 교육전문직이 전담하되 현재의 6급 인사담당자의 직급을 7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학무과에 배치함으로써 인사 및 일반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원 인사업무가 처리되어 온 현황과, 둘째 교원 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 셋째 설문조사 실시 내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인사업무가 처리되어 온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원 인사업무는 "교원인사 사무분장에 대한 지침"에 의하여 전문직은 장학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케 하기 위하여 '85년 6월 1일 이후부터 행정 6급 1명을 배치하여 초·중등 교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통합 담당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교원 인사사무에 일반직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으며, 현재에도 타 시·도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이후 교육전문직은 복잡한 수치를 처리하는 일이나 단순한 서식기재 등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만 교원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만 참여하는 형태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

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국장과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전문
직과, 현재 이를 담당하는 일반직의
의견을 회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수
렴하였고, 본청에 "인력진단실무위원
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 하였으며, 동 조정작업의 객관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
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
무과장, 초·중등교육계장 각 1명,
국·중학교 교감 및 교사 각 5명, 인
사담당자 1명씩 모두 154명을 무작위
표출하여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작
성된 설문지를 배포·수합하여 그 결
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사결과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
째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순수 장학업
무 이외에 교원 인사업무에도 관장해
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7% 였습니다.

둘째, 교원 인사업무는 교육전문직
이 전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2%였습니다.

셋째, 현행제도에 대한 불만의 원
인으로는 교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
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47% 응답하였
고, 일반직이 교원신상에 관한 사항
을 취급한다는 자체를 45%의 응답자
가 불만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현행제도를 평가해 볼 때, 교원
의 입장에서는 일반직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불만요인이 상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직의 입장에서
는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하여 보임
기피현상 등의 사기 저하요인이 있었
음을 알 수 있어, 현행 제도는 교원
과 일반직 모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
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
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결과 교원 인
사사무는 교육전문직이 전담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도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반직을 감축할 경우 교육전문직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 6급 대신 행정 7급 1명을 배정함으로써, 학무 행정의 계속성 있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 이상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상히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낭독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오후 계획도 있으니 잠시 정회를 했으면하고 의사진행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관리담당관이 보고하고 계시는 그 내용은 이 유인물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첨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1시부터 지금까지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한 5분정도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12시 39분)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김사수 위원

이 보고서에 대하여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중입니다.

● 김사수 위원

인력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그동안 여러차례 했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으로서 끝내는 것이죠?

보고서로서 일단 보고를 끝내는 것 아닙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김사수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실지 결과보고서는 대략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밑에 실시 결과에 대한 요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안될 것 같으면 1월달 첫 회의때라도 이 요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또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가지 이해 안가고 어떤 경과를 거쳐서 이런 결과를 나왔는지, 이것도 질문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보고서 받는 것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이 다음에 요약한 것에 대해서는 1월달 첫번 교육위원회 할 때에 상세한 설

명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요약서를 설명해서 시나리오로 써넣은 내용이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주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금 부연 설명한 것이 조금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체계가 전부 맞아 들어가서 끝에 가서 결론도 그 요약하고 같이 맺어집니다.

● 김사수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1월달에 가서 보고를 듣는 것으로...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오늘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한번 더 보고요약서,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지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즉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기준을 상향하게 한다던가 하향하게 할 때가 있을 텐데, 그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며,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은 공

청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십니까, 전혀 주민들의 여론을 도외시 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관계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임진섭

행정계장 임진섭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행정과장님이 도의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관계를 제가 해도 괜찮은지요 ?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예,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 행정계장 임진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폐합 기준은 유인물의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별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참조)

그렇지만 이것은 탄력적이며 반드시 이 기준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지역교육청의 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지역교육청의 계획을 들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법규대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 주민들이 희망할 때도 있고 반대할 때도 있을 때, 그곳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셔야만 교육자치 정신에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지역교육청의 의견만 듣고 한다면 그게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 행정계장 임진섭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수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이 문제는 대개가 초등교육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통·폐합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실정·거리, 특히 학교거리입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갈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당연히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통·폐합의 시기를 다소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되셨는지요?

● 권혁풍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규정대로만 엄격히 지킨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법대로 하는 것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뭔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사

전에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시는 그런 과정이 있을텐데, 물어보는 방법이 설문조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듣지 않고 하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신거나,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제가.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지역주민의 의사 반영 문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교가 학부모님 회의를 소집해서 그 실정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때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리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불편해서 도저히 통·폐합 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에는 통·폐합을 유보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장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학교장 의견이고, 해당 학교장 의견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편의

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집된 그 사항을 교육장 의견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학교 돌아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성군 관내에 모 학교가 있는데, 지금 분교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위치가 거리가 사방 2km까지는 마을이 없어 무인지역에 처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식적인 얘기는 들어보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교장선생님 말씀인데 "오히려 본교로 통합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버스를 하나 사서 운행을 해준다면 통합을 시켜주는 것을 바란다" 하는 여론이 돌고 있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거기가 어느 학교죠?

● 권혁풍 위원

이게 정확한 여론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말씀만 들었는데, 관성

국민학교라는 데가 있죠.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학생수가 기준에 근접해 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 준다든지 또는 버스 값을 대준다면 본교로 다니겠다" 이렇게 전원 합의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통·폐합을 합니다.

그건 받아 들여야죠.

● 권혁풍 위원

그럴때 주도하는 것은 교장이 주도를 해야 되겠죠?

교장이 앞장서서.....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그 관성분교 문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의견을 재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님, 또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면 9월에라도 통·폐합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권혁풍 위원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전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전에 반대토론이 없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3.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같은 내용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 두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권혁풍 위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해 보니까 토지를 취득한 것을 알기 쉽게 하느라고 제가 평수로 환산을 했더니 2만 1천평을 액수로 따져볼 때 146억 2,700만원에 해당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비싼 토지도 있고, 싼 토지도 있겠지만 고루게 평당 평균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평당 69만원

에 토지를 취득하고 있던군요.

여기에 비해서 토지를 처분할 것을 한번 봤습니다.

3만 4,210평을 처분하는데 액수로 따져서 33억 2,400만원이 되어서 따져보니까 평당 9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당가격이나 혹은 m²당 가격이, 물론 공시지가 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었기에 팔 때는 이렇게 싸게 팔게 되고, 살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는 이런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사실은 시내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시골땅하고 시내땅은 다른데, 청주기계공고 부지를 파는 것을 한번 보니까 취득할 때도 역시 평당 44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청주기계공고 부지가 가경동 일대로 아는데 44만원 해서 5,294평을 사는데 23억 7,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청주기계공고가 앓고 있는 땅은 그야말로 청주의 도심지 노른자 땅인데 이것을 파는

값을 보니까 1만 251평을 파는데 12억 5,700만원 받아서 평당 12만원에 팔립니다.

물론 이것이 판다는 어떤 확정적인 값은 아니겠죠.

어떤 기준 시가에 의해서 되는데, 기준 시가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가,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것인지 의문이 납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데 왜 그런가를 답변해 주시고, 기계공고의 토지와 건물을 따로 파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땅을 팔고 건물이 안팔릴 경우도 건물만 팔리고 땅이 안팔릴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청주기계공고 부지에 교충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충건물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불용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물론 경매입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토지

와 건물을 매각하면 대금이 생기는데 대금의 귀속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주 종합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관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본청 구내식당 사용료가 191평을 224만 9,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평당으로 따져보니까 1만 1,774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내의 임대료를 볼 때,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마는 보통 평당 100만원을 호가한다고, 이것은 최고 값도 아니고, 최저 값도 아니고 보통 평당 건물 전세값이 평당 100만원을 잡습니다.

그럴때 월 십만원꼴은 되어야만 될 텐데 어째서 1만 1,000원 밖에 안되느냐, 즉 시중가의 10분의 1정도밖에 해당이 안된다면 이게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마는 기준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하한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이하는 받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얼마든지 많이 받을 수만 있으면 받아서 우리 교육재정에 충당해 쓴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왜 이렇게 시중가 하고 떨어져서 하게 되었는가, 혹시 이런 것이 특혜 의혹을 살 염려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질문을 드리고, 아울러서 무상 사용을 허가한 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겠죠, 사정도 있고.

그럴때 사정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92년도 관리 계획에는 명세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각한 것 하고 취득한 것의 차이가 토지 취득은 평당 51만원씩 했으며, 팔 때는 3만원에 올렸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기준 시가는 같을 텐데 팔 때하고 살 때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관계관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 재무과장 정현동

재무과장 정현동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국장님께서 도의회에 가셨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답변하시죠.

● 재무과장 정현동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팔 때는 싸게 팔고 살 때는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현재 기계공고 파는 것도 대장가격으로 명시만 해놨지 그것은 시가 감정을 다시 할 겁니다.

현시가로 해서 저희가 예측하기를 대장가격은 이렇다 하더라도 청주기공고 가격은 평당 기백만원은 가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국감정원하고 아세아감정평가원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의뢰를 해서 파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가격은 그것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대장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던간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계획이고, 또 그렇게 반드시 할 것입니다.

● 권혁풍 위원

대장가격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정현동

아닙니다.

저희 재산대장이 있는데, 그전에 건물을 얼마에 지었으면 지은 금액을 해마다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가격 하고 실 매매 가격하고는 좀 틀립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놓은 금액은.....

● 재무과장 정현동

대장가격이죠.

아직 감정을 안했으니까, 저희는 어느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재무과장 정현동

기계공고 예를 든다면 대장가격하고 실지 팔으면 반대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취득가격보다.....

● 권혁풍 위원

반대가 나와야죠.

● 재무과장 정현동

예.

우리가 매매한 가격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충건물, 그것은 일괄해서 팔고 거기에다 그만큼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충 건물은 우리가 건물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의 현재 계획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해 주고, 그 건물은 교충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매각된 금액만큼 환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토지 매각에 대한 금액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신설 사업 계획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팔았다고 해서 그 학교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개 거의가 그 학교로 환원이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다소 그 학교로 환원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구내식당을 실례로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구내식당이 같은 시중에 있는 건물이라 할 지라도 시중의 상가하고 여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구내식당이라는 존재가 교육청 직원들이 시내 나가서 식사할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식비를 사실 저희가 올리지를 못합니다

1,100원씩 해서 여직원, 고용직 모두 빼면 하루에 한 150명정도 식사를 할까 말까할 정도 됩니다.

한 끼만 왕창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고용하는 아주머니들이 7-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0만원씩만 쳐도 상당한 금액인데 1,100원씩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주일에 5일간 한다고

하면 20일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올려 받았을 경우에 직원들 식사는 거기에 비례해서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현재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근접돼 있으면 좋은데, 반 값이라든가 3분의 1 값이면 좋은데, 10분의 1 값이나 떨어진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재무과장 정현동

저희가 구내식당 인상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면 무상대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정현동

무상대여는 저희가 어쩔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가 활용치 않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주고, 또 반면에 저희가 타 기관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비례해서 많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해준 것은 강내면 다락리 교원대 기숙사, 교원대 기숙사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을때에 돈이 없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다, 그 때는 교육위원회 이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이지만, 교부금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교원대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교육청 재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숙사를 지어 줄 돈이 교육부에 없기 때문에 교부금을 저희한테 내주고, 교원대에서 지어서 명목은 저희 돈이니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료를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옥천군 금구리 같은 데는 저희가 운동장 진입로로 사용하기 때

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한테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그 다음에 기계공고의 건물하고 토지는 일괄적으로 팔릴 테죠 ?

● 재무과장 정현동

기계공고 건물하고 토지는 저희가 분할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매각할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 재무과장 정현동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본 안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전들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계시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1분)

5. 기타안건 처리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음은 기타안건 처리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권혁풍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어떤 지방재정법에 있다고 해서 기준에 너무 얽매이는 케이스는 없는가, 어디까지나 경매 입찰에 붙여서 최대 값을, 최고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청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서 부족한 교육재정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금년 1년간 12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60일 동안 26건의 의안과 51건의 일반안건 등 총 77건을 처리하면서,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부대의견을 달아 승인하는 등 2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충청북도교육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며, '9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 3건을 수정 의결하는 등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1992년의 회의를 마감하면서 내년 1993년에도 더욱 더 충청북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우리 교육위원 모두가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4분 폐회)

○ 출석위원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1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총무과장 고일영,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재무과장 정헌동.

-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 별첨 9.
-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요약) : 별첨 10.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18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2. 12. 8. - 12. 15. (8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 8(화) 14:3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1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9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의결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5.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6.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12. 8 - 12.15. (8일간)
12. 9(수) 10: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제2차 본회의 산회 】	
12. 10(목) -12. 14(월)	휴 회(현장 확인)	
12. 15(화) 11:00	【 제3차 본회의 개의 】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 3.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결 4.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5. 기타안건 처리 【 제3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 2)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2. 11.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년월일 : 1992. 1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교육과정 개편 및 학교의 위치이전,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학교 명칭과 위치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학과 개편에 따른 고명 변경학교 : 정주중앙고등학교외 1교 - 별첨
- 나. 위치이전 학교 : 충북체육고등학교
- 다. 분교장격하 학교 : 청원군 용곡국민학교외 10교 - 별첨 ('93.3.1.시행)
괴산군 문광국민학교외 1교 - 별첨 ('93.9.1.시행)
- 라. 분교장폐지 학교 : 증원군 세성국민학교 향산분교장외 11교 - 별첨
- 마. 본교의 분교장격하로 인한 본교 변경 : 미원국민학교 중앙분교장

3. 개정근거

- 가. 교육법 제82조 (설립자) 및 교육법 제85조 (학교의 설립·폐지)
- 다. '93.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4. 조 례 안 : 별 첨

5. 기타 참고 사항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골자 : 별 첨
- 신·구대비표 : 별 첨
-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 첨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의 별표1,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중 동인국민학교 문광분교장과 백봉국민학교 운곡분교장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 명

명	지
경주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북대동 869번지
영북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문평동 316-2번지
경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울랑동 534번지
영북예술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사창동 227번지
경주외국어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사창동 227번지
미천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금전동 산 15-4번지
영북체육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사직1동 808번지
영북과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아리 산 4-23번지
경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내덕동 322번지
경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영 동 79번지
영북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경주시 울랑동 663-9번지
충주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58번지
충주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55번지
충주여성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526-1번지
충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72번지
충주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35번지
제천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정전동 163-1번지
제천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80번지
제천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45번지
한국광산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고명동 765번지
제천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82번지
미원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218-2번지
부강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997-1번지
보은여자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고사리 116-2번지
보은상업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71-2번지

명칭	위치	지
보문초등학교	충청북도 보문군 보문읍	교사리 100번지
북천초등학교	충청북도 북천군 북천읍	삼양리 115-4번지
정산초등학교	충청북도 북천군 정산면	백운리 333-1번지
북천상업초등학교	충청북도 북천군 북천읍	문정리 247번지
북천공업초등학교	충청북도 북천군 북천읍	금구리 40번지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72-7번지
황간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431번지
화산상업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화산면	서산리 907-3번지
영동공업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6번지
진천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산 1번지
광혜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송면	광혜원리 512번지
진천상업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662번지
진천공업초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고성리 166번지
괴산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201번지
증평상업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조중리 11-8번지
목도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북정면	목도리 360번지
증평공업초등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620번지
음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번지
금왕공업초등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주포초등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주포면	신중리 130-3번지
제원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팔승리 360번지
청풍초등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산 6번지
단양초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324번지
단산초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311번지
단양공업초등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북하리 58번지

(별표 4)

고 민 학 교

명 칭	위 치
주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48번지
내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180번지
석 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10번지
중 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동 4번지
정 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127번지
한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1동 560번지
모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울랑동 656번지
남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본평동 219-1번지
서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977번지
우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137번지
모 충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372번지
용 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용담동 186번지
용담국민학교 현양원학교장	충청북도 청주시 월오동 71-1번지
운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543-7번지
청 주 내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2동 61번지
창 신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정동 351번지
사 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2동 38-2번지
강 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비하동 123번지
내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국동 12번지
서 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서촌동 184번지
현 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현암동 91번지
금 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금전동 215-1번지
북 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북대동 709-4번지
봉 명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205번지
홍 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천동 865번지

명칭	위치
곡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우암동 260-1번지
북일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주중동 428번지
운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운동동 430번지
해정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2141번지
산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택지개발지구내
물량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물량동 1034번지
가경국민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 752번지
충주교현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339-1번지
충주남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2109번지
충주삼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암동 11-1번지
충주예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383-1번지
단월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513-19번지
무행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무행동 577-1번지
팔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410-1번지
남한강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924번지
충주성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1동 293번지
충주성남국민학교 동신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목발동 447-10번지
충주성남국민학교 중인분교장	충청북도 충주시 중인동 510-3번지
충주대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81번지
충주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세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세성리 147번지
세성국민학교 살미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내사리 600-8번지
세성국민학교 공이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공이리 448-1번지
수안보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상모면 안보리 598번지
수회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상모면 수회리 672번지
수회국민학교 팔봉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살미면 토계리 263번지

명칭	위치
대소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이류면 대소리 569-15번지
이안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이류면 원오리 889번지
매현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이류면 매현리 480번지
주덕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주덕면 신중리 72번지
도신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주덕면 재내리 265-1번지
용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신니면 용원리 245-3번지
동락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신니면 문락리 126번지
노은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연하리 535-2번지
노은국민학교 수흥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수흥리 554-1번지
수상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
양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용대리 257번지
양성국민학교 영죽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영죽리 264-4번지
강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옥미리 89-2번지
강전국민학교 단암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단암리 412-1번지
해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양성면 돈산리 11-5번지
가금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탑평리 212-1번지
창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창동리 산 22-2번지
가봉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가봉리 582-8번지
금가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금가면 하담리 294-2번지
오석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금가면 유승리 226-3번지
동량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조동리 1426-1번지
동량국민학교 서운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서운리 155번지
동량국민학교 하천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손동리 336번지
대미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동량면 대전리 1517번지
산척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송강리 1282-1번지
산척국민학교 석천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산척면 석천리 203번지
엄정국민학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용산리 460번지

명 칭	위 치
주 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주평리 455-6번지
목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엄정면 목계리 111번지
소 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오량리 199번지
소태국민학교 덕은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덕은리 229번지
야 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야동리 487번지
야동국민학교 하남분교장	충청북도 증원군 소태면 주치리 645-1번지
동 명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동 59번지
의 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동 186번지
영 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2동 255-12번지
남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남천동 1번지
화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산 16-5번지
청 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470번지
흥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아산) 396번지
두 학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436번지
명 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시 명지동 48-1번지
제천중앙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652번지
금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금성면 구룡리 294번지
금성국민학교 장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장산리 98번지
양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금성면 양화리 623번지
청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144-3번지
청풍국민학교 양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청풍면 도곡리 산 21-7번지
정 풍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상천리 산 8-3번지
수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내리 168번지
수산국민학교 주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도전리 175번지
대 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대전리 218번지
덕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전리 425번지
덕산국민학교 월악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월악리 596번지

명 칭	위 지
선림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선고리 92-3번지
선림국민학교 도기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도기리 340-2번지
유덕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신현리 606번지
유덕국민학교 북평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덕산면 수산리 833-2번지
송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753번지
백운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평동리 600번지
화당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화당리 84-1번지
화당국민학교 운학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백운면 운학리 320번지
봉양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연박리 921번지
봉양국민학교 명암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명암리 605-4번지
봉양국민학교 학전분교장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옥전리 180번지
봉양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마곡리 540번지
왕마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미당리 757번지
공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봉양면 공전리 265번지
송학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시곡리 1164번지
입석국민학교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입석 3리 609-2번지
남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성면 이목리 108-1번지
갈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성면 갈산리 341-1번지
산등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성면 관정리 277-1번지
미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미원면 미원리 298-3번지
미원국민학교 용곡분교장	충청북도 정원군 미원면 용곡리 291번지
미원국민학교 중암분교장	충청북도 정원군 미원면 중암리 387번지
금관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미원면 금관리 306-1번지
기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미원면 기암리 251-1번지
가덕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가덕면 병암리 125번지
행정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가덕면 행정리 28-1번지
상야국민학교	충청북도 정원군 가덕면 상야리 351-1번지

명	칭	위	지
남 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일면	쌍수리 321-33번지
신 송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일면	신송리 411번지
동 화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일면	화당리 361-1번지
두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일면	두산리 106-1번지
남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이면	대련리 255번지
갈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남이면	갈원리 143-1번지
문 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번지
문 의	국 민 학 교 소전분교장	충청북도 정원군 문의면	소전리 653-2번지
도 원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문의면	두모리 243번지
현 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현도면	달계리 548-1번지
현 도	국 민 학 교 노산분교장	충청북도 정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
목 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현도면	죽전리 622-4번지
부 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부용면	부강리 432-3번지
외 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부용면	외천리 294번지
강 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강내면	다락리 348-1번지
강 내	국 민 학 교 저산분교장	충청북도 정원군 강내면	저산리 200-3번지
강 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강외면	오송리 60-1번지
상 봉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강외면	상봉리 242-1번지
만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강외면	만수리 163번지
만 수	국 민 학 교 공북분교장	충청북도 정원군 강외면	공북리 337번지
목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옥산면	오산리 223번지
목 산	국 민 학 교 호죽분교장	충청북도 정원군 옥산면	호죽리 300-3번지
금 계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옥산면	금계리 223번지
소 로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옥산면	소로리 313-1번지
오 창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오창면	장대리 238번지
가 좌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오창면	가좌리 129번지
각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정원군 오창면	각리 28-3번지

명 칭	위 치
유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유성면 유리 394번지
북 이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주리 10-3번지
석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문리 344번지
대 길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대길리 228번지
내 수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마산리 171번지
비 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비상리 200번지
수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내수리 263-1번지
수성국민학교 입애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입상리 425-1번지
구 성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구성리 265번지
삼 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56-3번지
흥 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4-1번지
중 국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강신리 54번지
학 림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동리 9-1번지
중 초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408번지
수 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수리면 사내리 181-1번지
수정국민학교 반주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수리면 상판리 210-2번지
수정국민학교 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수리면 하판리 43번지
수정국민학교 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수리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외수리면 장내리 243-2번지
관 기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294번지
관기국민학교 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49번지
관기국민학교 소여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470-1번지
관기국민학교 기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328-2번지
세 중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종리 575-2번지
탄 부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63번지
사 직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사직리 151번지
보 덕 국 민 학 교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35-5번지

명칭	위치
삼승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상가리 333번지
판용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번지
승주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승주리 192-4번지
수한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스계리 17-2번지
동정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20-1번지
회남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거고리 249번지
회인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회인국민학교 회양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고석리 123-1번지
내북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 119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원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209-1번지
내북국민학교 이석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이석리 84번지
아곡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상궁리 46-2번지
산외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리 52번지
장갑국민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장갑리 318번지
주향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83번지
주향국민학교 김북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45번지
삼양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5-1번지
군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279번지
군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83번지
동이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72-1번지
우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833-1번지
우산국민학교 정마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정마리 872-1번지
안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416번지
삼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정정리 510-1번지
안내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 171번지
안내국민학교 용촌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160번지
청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234번지

명	칭	위	지
정성국민학교	신성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정산면 신매리 667번지
묘리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정성면 묘리 19-1번지
해월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정성면 도장리 496번지
화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정성면 화성리 295-1번지
정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정산면 지전리 34번지
정산국민학교	대월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정산면 대성리 173-1번지
예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정산면 예곡리 150번지
청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정산면 효목리 675-1번지
이원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강정리 14-7번지
지탄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지탄리 754-1번지
대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의평리 276-2번지
군서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551번지
증약국민학교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641번지
증약국민학교	대정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영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74-4번지
이수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485번지
부용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번지
화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 44-1번지
용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13번지
구룡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룡리 141-1번지
부상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698번지
황간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167-2번지
용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용암리 643번지
노승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번지
주풍령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주풍령면 주풍령리 375-1번지
주풍령국민학교	신안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주풍령면 신안리 63번지
매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1번지

명 칭	위 치
전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공수리 463-2번지
상촌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임산리 357-1번지
봉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공촌리 301번지
양강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모동리 321번지
미봉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무점리 697-3번지
미봉국민학교 구강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6번지
웅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웅화면 웅화리 760번지
학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738-1번지
봉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산리 563-1번지
범화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748-1번지
양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293-2번지
양산국민학교 천태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08-1번지
심천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528번지
조강국민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조강리 459번지
조강국민학교 금호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7번지
진천상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57-1번지
진천삼수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33-1번지
성암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679-2번지
신덕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607-2번지
이월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승림리 452-4번지
학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597-7번지
금구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579번지
옥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359-2번지
한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518-3번지
한전국민학교 두촌분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매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465-1번지
소평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소평면 금곡리 593번지

명	장	위	지
구정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조평면 용산리 236-1번지
구정국민학교	오상면교장	충청북도 진천군	조평면 은암리 290-1번지
문백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297번지
문상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38-1번지
백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수리 144번지
만승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번지
상대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상대리 498-2번지
상신국민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37-18번지
영덕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335번지
동인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85번지
동인국민학교	문광면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번지
신기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 469번지
제월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 289번지
감물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81-1번지
감물국민학교	이담면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640번지
장연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349번지
장풍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 285-3번지
광진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814-1번지
연풍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162번지
우수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유하리 204-1번지
철성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철성면 도정리 311번지
외사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철성면 외사리 152번지
광덕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294번지
정천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정천면 정천리 77-1번지
정천국민학교	신월면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정천면 신월리 144번지
송면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정천면 송면리 116-2번지
송면국민학교	삼송면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정천면 삼송리 530번지

명 칭	위 치
덕평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정전면 덕평리 280번지
어흥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정전면 도원리 287-1번지
정안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정안면 읍내리 221번지
백혜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정안면 부흥리 428번지
백혜국민학교 유곡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정안면 유곡리 209-2번지
장암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정안면 장암리 401번지
증평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고동 1056번지
죽리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죽리 308번지
삼포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신동 1105-2번지
도안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도안면 화성리 87번지
포광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576-1번지
화곡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이곡리 452번지
백마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1-1번지
소수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
소수국민학교 북상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번지
소수국민학교 강신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219번지
목도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90번지
주산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주산리 575-1번지
주산국민학교 삼방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304번지
세평국민학교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 213-3번지
수흥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209번지
남신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57-6번지
평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815번지
덕생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상생리 94번지
무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81번지
무곡국민학교 사정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949번지
웅전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곡리 50번지

명	지	위	치
오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산리 233-2번지
쌍봉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413번지
소이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68번지
대장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374번지
원남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71번지
원남국민학교	계양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운암리 593번지
하당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433번지
맹동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4번지
대소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6-1번지
부윤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392번지
삼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목정리 508번지
해산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해산리 203번지
정흥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정흥리 352-7번지
생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곡면	신양리 451-1번지
생곡국민학교	관성분교장	충청북도 음성군 생곡면	관성리 13번지
오성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생곡면	생리 570번지
감곡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항리 510-2번지
상평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상평리 344번지
오강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오강리 2-1번지
원당국민학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159번지
단양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405번지
단양국민학교	여천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리 241번지
상진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734번지
노동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265번지
금곡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107번지
단천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복상리 108번지
가산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290번지

명 칭	위 치
대강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91번지
대강국민학교 황정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193번지
장정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정리 30번지
가곡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67번지
대곡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220-1번지
보팔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보팔리 711-1번지
영춘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640번지
별방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540번지
별방국민학교 우암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우암리 253번지
동대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806번지
의풍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760번지
어상천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1리 456-1번지
어상천국민학교 배양분교장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심곡리 79번지
선암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리 69번지
매포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2리 271번지
도담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우덕1리 63번지
가평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가평리 181-2번지
적성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59번지
대가국민학교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191번지

(별표1)

신·구 대비표

(고등학교)

현			행			경		
명	지	위	지	위	지	명	지	위
정주고등학교	정주	경북도 정주시 북대동 869번지	정주	경북도 정주시 북대동 869번지				
정주중앙고등학교	정주	경북도 정주시 사창동 227번지	정주	경북도 정주시 사창동 227번지		정주예술고등학교		영진번영
정주체육고등학교	정주	경북도 정주시 금전동 신15-4번지	정주	경북도 정주시 금전동 신15-4번지				위치이전
진천중앙고등학교	진천	경북도 진천군 진천읍 고성리 166번지	진천	경북도 진천군 진천읍 고성리 166번지		진천중앙고등학교		영진번영

(별표4)

신·구 대비표

(국민학교)

현		행			경			비	고
명	칭	위	지	비	고	명	칭	위	지
주성국	민학교	충청북도 정주시 영동	48번지						
생	락								
새성대	민학교	충청북도 증평군 삼미면	항신리 379번지			삭		제	
합성	학교								
배성	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삼거리 538번지			삭		제	
배성	학교								
수원	민학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학리2구 543번지			삭		제	
수원	학교								
영	대	충청북도 정음면	영곡리 291번지			미원국	민학교		
영	대					미원국	민학교		
영	대	충청북도 정음면	정음리 307번지			미원국	민학교		
영	대								
영	대	충청북도 정음면	정음리 538번지			미원국	민학교		
영	대								
영	대	충청북도 괴곡면	하판리 43번지			수정	민학교		
영	대								
영	대	충청북도 괴곡면	상가리 140번지			수정	민학교		
영	대								

참 고 자 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관련서류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주요 글자.
- 교육법 제82조(설립자) 및 교육법 제85조(학교의 설립, 폐지)
- '93.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본교장격하 ,
본교장폐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주요골자

1.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학교 ('93. 3. 1.)

구 분	명 칭	위 치	변 경 사 유
변 경 전	청주중앙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사창동 227번지	일반계열 학생 전원 졸업하고 순수예술 계열 학생 재학.
	충북예술고등학교	
변 경 전	진천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66번지	정보통신과 2학급 병설 운영.
	진천해양고등학교	

2. 위치이전 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비 고
충북체육고등학교	이 전 전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산15 - 4번지.	금천고등학교에 서 분리.
	이 전 후 사직1동 808번지.	

* 이전사유 : 충북체육고등학교는 금천고등학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학교위치가 확정되어 신축중에 있음.

3. 본교장격하 학교.

격하전 명칭	격 하 후 명 칭	위 치	격하일
용곡국민학교	미원국민학교 용곡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용곡리 291번지	'93.3.1.
노산국민학교	현도국민학교 노산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538번지	'93.3.1.
북암국민학교	수정국민학교 북암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하판리 43번지	'93.3.1.
삼가국민학교	수정국민학교 삼가분교장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93.3.1.
군북국민학교	죽향국민학교 군북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45번지	'93.3.1.
대정국민학교	종악국민학교 대정분교장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77번지	'93.3.1.
구강국민학교	미봉국민학교 구강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76번지	'93.3.1.
금호국민학교	초강국민학교 금호분교장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397번지	'93.3.1.
이담국민학교	감물국민학교 이담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이담리 640번지	'93.3.1.
신월국민학교	청천국민학교 신월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44번지	'93.3.1.
광신국민학교	소수국민학교 광신분교장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동촌리 219번지	'93.3.1.

격하전 명칭	격하후 명칭	위	지	격하일
문광국민학교	해인국민학교	해안면	신기리 111번지	'93.9.1.
문곡국민학교	보해국민학교	해안면	문곡리 209-2번지	'93.9.1.

* 격하사유 :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내실화 도모,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도모

4. 분교장폐지 ('93. 3. 1.)

분교장 명칭	위	지	폐지사유
세성국민학교	향산면	향산리 379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 교육의 내실화 도모. ○ 인력 및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봉암국민학교	제천면	삼거리 538번지	
송학국민학교	제천면	송학리 2구 543번지	
안내국민학교	유천면	동대리 395-1번지	
영동국민학교	영동읍	회신리 228-3번지	
상해국민학교	상촌면	고자리 360-4번지	
학산국민학교	학산면	지내리 549번지	
문백국민학교	문백면	은탄리 338-2번지	
연풍국민학교	연풍면	원풍리 437번지	
어룡국민학교	정전면	후영리 196-1번지	
가곡국민학교	가곡면	향산리 347-4번지	
어상전국민학교	어상전면	연곡리 631번지	

5. 분교 변경 ('93. 3. 1.)

구분	명칭	위	지	비고
변경전	웅곡국민학교	정원면	증암리 387번지	
변경후	미원국민학교	

* 변경사유 : 분교인 웅곡국민학교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분교장으로 격하함에 따른 명칭 변경.

관계법령 발췌 (교육법)

- 제82조(설립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 제85조(학교의 설립·폐지) ①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교육감의, 공·사립의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 또는 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야 한다.
 - ③ 각급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권자가 이를 행한다.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소규모국민학교 통·폐합 기준

0.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1. 본교폐지 : 학생수 180명이하, 편성학급 6학급이하의 학교로서 4km이내에 인근교가 있는 경우.
2. 본교장폐지 : 학생수 10명이하의 본교장으로서는 인근에 2개교이상 있는 경우
3. 본교장격하 : 학생수 100명이하의 본교.

* 통·폐합 기준적용의 탄력적 운영

- 본교 통·폐합 기준의 4km이내의 거리 개념을 통학편의 제공시에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통학가능 지역까지 확대 적용.
- 학급수 및 학생수등 학교규모가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통·폐합이 가능한 학교는 이 시책에 의거 추진

(별첨 3)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2.12. .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8-2
------	------

제출년월일 : 1992. 12.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93년도 도유(교육)재산의 취득, 처분 및 사용허가등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기관 : 본청 및 지역교육청

나. 계상내역

1) 취득	: 0 토지	69,448㎡	14,627,762천원
2) 처분	: 0 토지	113,091.9㎡	3,324,939천원
	0 건물	21,897.3㎡	2,053,862천원
	0 공작물	23 식	24,787천원
3) 유상사용허가			
	0 토지	529,811.16㎡	84,487천원
	0 건물	19,229㎡	87,488천원
4) 무상사용허가			
	0 토지	85,440㎡	
	0 건물	7,070.6㎡	

3. 제 안 근 거

0 지방재정법 77조

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0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4.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덧 붙 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 붙 임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재산분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기타	중요재산	토지 (취득)	기계공고	사유지 매입	17,504	2,376,000	기계공고 이전 부지
	기타재산		전전농고	·	17	408	실습지 사용
	소계			6 필지	17,521	2,376,408	
	중요재산	토지 (처분)	기계공고	불용토지매각	33,890.6	1,257,340	기계공고 이전
	기타재산		재천고	·	314	4,835	주택부지
	기타재산		중주고	·	63	3,878	·
	소계			4 필지	34,267.6	1,266,053	
	중요재산	건물 (처분)	기계공고	건물매각	21,048.39	2,028,516	기계공고 이전
	기타재산		중주고	사택철거	96.03	106	노후 및 개축
	기타재산		전전농고	농기계창고철거	352.4	2,769	노후 및 실습실 부지
	기타재산			계사철거	56.19	2,419	실습지경지정리
	소계			25 동	21,553.01	2,033,810	
	중요재산	공작물 (처분)	기계공고	공작물 매각	23 식	24,787	기계공고 이전
	소계			1 건	23 식	24,787	
	기타재산	토지	본청외13고	유상사용허가 (14건)	11,224.14	12,920	목록 불임
기타재산	건물	본청외16고	유상사용허가 (17건)	6,195.92	22,053	·	
소계			31 건	17,420.06	34,973		
기타재산	토지	본청	무상사용허가 (1건)	302		공설운동장진입 로(옥천군청)	
기타재산	건물	본청	무상사용허가 (1건)	3,689.52		기숙사(교원대)	
소계			2 건	3,991.52			

구분	재산종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정주	중요재산	토지 (취득)	방죽국	사유지매입	11,340	3,447,360	신설학교부지매입
			용암국	·	11,390	2,574,140	신설학교부지매입
	기타재산		용암중	·	12,000	3,912,000	·
			청담국	·	75	56,700	학교시설결정내부지매입
			덕성국	·	572	257,400	·
			용담국	·	40	11,400	·
			사직국	·	68	24,480	·
			강서국	·	1,785	428,400	·
	소계			8필지	37,270	10,711,880	
	기타재산	토지	강서국	불용토지매각	1,850	475,680	불용토지(고층)
			주성중	·	51.3	15,500	주택부지
	소계			2필지	1,901.3	491,180	
	기타재산	건물 (철거)	남성국	사택철거	60.03	13,316	'94개교예정인 "남성중" 학교부지내에 위치
소계			1동	60.03	13,316		
기타재산	토지	주성국외 8교	유상사용허가 (14건)	29,338.72	6,532	목록불임	
		건물	고동국외 20교	유상사용허가 (22건)	998.89	15,782	·
	소계			36건	30,337.61	22,314	
충주	기타재산	토지	고현국외 17교	유상사용허가 (18건)	54,239.3	13,942	목록불임
			건물	복성국외 2교	유상사용허가 (3건)	1,428.24	6,776
	소계			21건	55,667.54	20,718	
	기타재산	토지	본청	무상사용허가 (1건)	270		문화회관광장(충주시장)
소계			1건	270			

관 별	재 산 류	구 분	학 고 명	사 업 명	물 량	금 액	사 유
재 전	중요 재산 기타 재산	토지 (취득)	하 소 국	·	11,000	1,120,000	신설학교 부지
			입 석 국	·	333	7,000	사 택 부 지
			동 명 국	·	35	6,700	·
			봉 양 중	·	1,320	6,588	정구장 부지
	소계			4 필 지	12,688	1,140,288	
	기타 재산	토지	본정 외 7교	유상사용허가 (9건)	32,861	4,378	목 록 불 임
		건물	의림국외 2교	유상사용허가 (3건)	254.07	555	·
소계			12 건	33,115.07	4,933		
중요 재산 기타 재산	토지	수 산 국 괴국분교	무상사용허가 (1건)	11,087		청소년수련원 (재전군수)	
	건물	·	무상사용허가 (1건)	479.34		·	
	소계			2 건	11,566.34		
정 원	중요 재산	토지 (처분)	부 강 국	불용토지매각	74,777	1,057,000	불 용 토 지
			소계		2 필 지	74,777	1,057,000
	기타 재산	토지	남성국외 24교	유상사용허가 (25건)	90,964	14,772	목 록 불 임
		건물	호죽국외 4교	유상사용허가 (5건)	1,692.67	7,322	·
	소계			30 건	92,656.67	22,094	
	중요 재산 기타 재산	토지	본 정	무상사용허가 (1건)	62,136		고원대부속 월곡 국민학교
		토지	미원국외 3교	무상사용허가 (4건)	5,719		지 서
건물		본 정	무상사용허가 (1건)	1,976.64		고원대부속 월곡 국민학교	
소계			6 건	69,831.64			

관 계	재 산 류	구 분	학 교 명	사 업 명	물 량	금 액	사 유
본 인	기타 재산	토지	본 정 외 9교	유상사용허가 (11건)	36.636	3,981	목 록 불 임
		건물	내 복 중 외 3교	유상사용허가 (4건)	1,480.98	7,932	.
	소 계			15 건	38,116.98	11,913	
	기타 재산	토지	회 남 국 법수본교	무상사용허가 (1건)	7,099		고 원 대 고 직 원 및 학 생 연 수 용
		건물	회 남 국 법 수 본 교 외 1교	무상사용허가 (2건)	925.1		고 원 대 고 직 원 및 학 생 연 수 용, 보 은 문 화 원 임 시 사 무 실
소 계			3 건	8,024.1			
옥 천	기타 재산	토지 (취득)	본 정	교 환 취 득	5	186	테 니 스 장
		소 계		1 필 지	5	186	
	기타 재산 (처분)	토지	본 정 옥 천 중	교 환 처 분	11	408	개 인 점 유
				불 용 토 지 매 각	231	5,798	불 용 토 지
	소 계			2 필 지	242	6,206	
	기타 재산	토지	본 정 외 7교	유상사용허가 (9건)	12,587	3,186	목 록 불 임
		건물	죽 향 국 외 5교	유상사용허가 (6건)	880.88	5,559	.
소 계			15 건	13,467.88	8,745		
기타 재산	토지	본 정	무상사용허가 (1건)	1,927		정 산 면 민 회 관 보 건 소 부 지 (옥 천 군 수)	
소 계			1 건	1,927			
영 동	기타 재산	토지	용 암 국 외 9교	유상사용허가 (11건)	21,187	1,465	목 록 불 임
		건물	가 선 본 교	유상사용허가 (1건)	202.2	572	.
	소 계			12 건	21,389.2	2,037	

관 별	재 산 분 류	구 분	학 교 명	사 업 명	물 량	금 액	사 유
전 천	기 타 재 산	토 지	상 산 국 외 6 교	유 상 사 용 허 가 (9 건)	37,277	7,422	목 록 불 임
		건 물	연 국 본 교 외 1 교	유 상 사 용 허 가 (2 건)	596	2,274	·
	소 계			11 건	37,873	9,696	
괴 산	기 타 재 산	토 지 (취 득)	증 평 중	사 유 지 매 입	1,964	399,000	운 동 장 사 용
	소 계			1 필 지	1,964	399,000	
	기 타 재 산	건 물 (처 분)	재 밀 국	사 택 철 거	36.36	110	노 후
	소 계			1 동	36.36	110	
	기 타 재 산	토 지	명 덕 국 외 11 교	유 상 사 용 허 가 (13 건)	20,538	3,250	목 록 불 임
소 계				13 건	20,538	3,250	
음 성	기 타 재 산	토 지 (처 분)	무 국 국	불 용 토 지 매 각	1,904	504,500	불 용 토 지
	소 계			4 필 지	1,904	504,500	
		건 물 (처 분)	감 국 중	교 실 철 거	247.9	6,626	노 후
	소 계			1 필 지	247.9	6,626	
	기 타 재 산	토 지	수 봉 국 외 13 교	유 상 사 용 허 가 (17 건)	80,160	10,648	목 록 불 임
		건 물	도 서 관 외 1 교	유 상 사 용 허 가 (2 건)	814	2,885	·
소 계				19 건	80,974	13,533	
단 양	기 타 재 산	토 지	분 청 외 17 교	유 상 사 용 허 가 (18 건)	102,799	1,991	목 록 불 임
		건 물	기 동 본 교 외 8 교	유 상 사 용 허 가 (9 건)	4,685.15	15,778	·
	소 계				27 건	107,484.15	17,769

구분	재산류	구분	학교명	사업명	물량	금액	사유
합계	취득	토지	16 교		69,448	14,627,762	
	처분	토지	9 교		113,091.9	3,324,939	-
		건물	6 교		21,897.3	2,053,862	
		공작물	1 교		23 식	24,787	
	유상 사용 허가	토지	155 교		529,811.16	84,487	
		건물	71 교		19,229	87,488	
무상 사용 허가	토지	10 교		85,440			
	건물	5 교		7,070.6			

관 계 법 령 발 취 서

1.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에 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4347호)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5.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6.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② 제1항 제4호내지 제9호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제77조 및 영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에 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93. 기관별 유상사용허가 내역

(단위:㎡/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정사용료	용도
보정	본정	청주시 산남동	4-11	철.콘.슬	634	2,249	구내식당
		·	·	·	66	55	농협출장소
		·	6-1	임	14	18	주택부지
	중앙도서관	청주시 사직2동	38-5	철.콘.슬	637.5	2,400	구내식당
		가덕면 상야리	217	·	20	118	구내매점
	청주고	청주시 북대동	869	시.벽.스	454.5	1,740	구내식당
	충북고	청주시 본평동	233	조립식	546.88	1,896	·
	청주여고	청주시 울량동	534	·	218	834	·
	중앙고	청주시 사정동	227	연.슬	463.16	1,672	·
	충북상고	청주시 사전동	236-1	시.벽.스	384	1,866	·
	금천고	청주시 금천동	4-6	조립식	243.6	635	·
	청주기공	청주시 영동	87-6	학	1,008.8	5,145	교육회부지
	청주농고	청주시 내덕동	322	·	486	1,458	주택부지
		청주시 수동	산 2	임	1,256	230	중계탑부지
	충주고	충주시 호암동	558	콘.센트	696.36	1,812	구내식당
		·	·	·	학	240	720
	예성여고	·	526-1	·	4,700	3,900	자재야적
	재천고	재천시 정전동	산23-1	시.벽.스	218	970	구내식당
		재천시 고동	88-2	학	185.44	909	주택부지
	재천농고	재천시 동현동	35-59	·	18	59	·
	옥천고	옥천읍 삼양리	115-4	시.벽.스	216	480	구내식당
	영동고	영동읍 계산리	72-7	학	10.9	42	주택부지
	음성고	음성읍 읍내리	503-7	철.콘.슬	264.46	1,190	구내식당
	보은농고	보은읍 고사리	100-1	학	558	351	주택부지
	단양고	단양읍 도전리	324	조립식	334.08	1,764	구내식당

(단위:㎡/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추정사용료	용도
본청	보은여고	보은읍 고사리	209	대	50	42	퇴비장
	충주농고	충주시 봉방동	72	철.콘.슬	218.18	1,199	구내식당
	괴산고	괴산읍 대사리	201	시.벽.슬	264.4	389	·
	재원고	봉양면 팔승리	396-2	답	2,244	40	농경지
	광산공고	재천시 고명동	703-9	·	453	6	·
	재천여고	재천시 서부동	80	조립식	316.8	784	구내식당
청주	고동국	청주시 수동	180	시.벽.스	18.18	359	이발소
	·	·	·	·	8.26	180	매점
	석교국	청주시 석교동	10	·	8.75	158	·
	중앙국	청주시 문화동	4	철.콘.스	62.1	1,051	·
	청남국	청주시 영운동	127	조립식	86.4	1,366	·
	덕성국	청주시 울량동	665-7	·	33	257	·
	남성국	청주시 본평동	219-1	철.콘.스	104.4	1,481	·
	서원국	청주시 복대동	977	시.벽.스	11.88	195	·
	모충국	청주시 모충동	372	·	4.95	321	·
	운천국	청주시 운천동	543-7	·	17.28	189	·
	내덕국	청주시 내덕동	61	·	21.12	244	·
	금천국	청주시 금천동	213-1	·	89.52	1,033	·
	복대국	청주시 복대동	709-4	·	89.52	1,388	·
	봉정국	청주시 봉정동	2141	철.콘.스	8	148	·
	청주중	청주시 영동	8	시.벽.스	57.75	901	·
	주성중	청주시 수동	133	목와중	35.7	569	·
	청주남중	청주시 수곡동	124-3	시.벽.스	13.78	151	·
	청주동중	청주시 금천동	47-5	·	50	1,164	·
	중앙중	청주시 우암동	261-174	·	85	1,427	·
	서원중	청주시 가경동	486-3	경량식	116	1,697	·
봉명중	청주시 봉명동	1305	철.콘.스	40.3	972	·	

(단위:㎡/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정사용료	용도	
청주	중앙여중	청주시 사천동	229-5	시.벽.스	37	531	매점	
	주성국	청주시 수동	산 14	임	825	233	주택부지	
	고등국	청주시 수동	산 3	·	·	4,421	302	사찰
						2,746	174	농경지
						160	48	주택부지
	정남국	청주시 영운동	·	·	·	37.6	390	목공소부지
						33	343	사도
	덕성국	청주시 율랑동	·	·	·	1,060.6	1,633	주택부지
						648-9	194	농경지
	모충국	청주시 모충동	372	·	·	120	152	사도
	북일국	청주시 주중동	·	·	·	428-1	102	주택부지
						432	211	농경지
	청주중	청주시 영동	8	·	·	66.12	890	이발소부지
	주성중	청주시 수동	133	·	·	40	640	·
교육청	청주시 용암동	157-1	·	·	8,715	1,221	농경지	
충주	고현국	충주시 연수동	72-1	과	2,083	66	농경지	
	남산국	충주시 안림동	388-7	·	884	101	·	
	충주중	충주시 안림동	9-7	전	4,787	652	·	
	수안보국	상모면 온천리	116	답	872	113	·	
	매현국	이류면 문주리	793-1	전	6,371	405	·	
	대소원국	이류면 본리	393-2	하전	2,785	352	·	
	주덕국	주덕면 신중리	93-1	답	5,439	451	·	
	야동국	소태면 야동리	487	학	2,853	259	·	
	고현국	충주시 고현동	424	대	271	284	주택부지	
	목행국	충주시 목행동	577-1	학	2,269	1,286	·	
	매현국	이류면 매현리	480	·	198	35	·	
	소태국	소태면 오향리	204-4	대	347	126	·	

(단위: ㎡/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정사용료	용도
충주	노은국	노은면 면하리	535-1	학	1,493.3	702	주택부지
	복성국	양성면 지당리	201-5	·	8,686	1,357	연수
	지동분교	동량면 하천리	13-3	·	10,691	6,922	·
	방대분교	산적면 명서리	158-1	대	3,101	797	·
	충주중	충주시 안림동	산57-7	임	119	18	승전철탑
	매연국	이류면 문주리	산30-1	·	990	16	농경지
	복성국	양성면 지당리	201-5	철·콘·슬	622.62	2,452	연수
	지동분교	동량면 하천리	13-3	·	475.22	2,670	·
	방대분교	산적면 명서리	158-1	·	330.4	1,654	·
재전	교육청	재천시 화산동	191-1	임	86	46	농경지
	·	·	·	·	1,632	857	주택부지
	동명국	재천시 명동	59-4	대	116	237	·
	의림국	재천시 의림동	47-4	학	139	257	농경지
	의림국	재천시 의림동	186	시·벽·스	23	4	주택부지
	홍광국	재천시 모산동	257	전	17,997	870	·
	금성국	청풍면 정산리	9 8	학	2,645	78	·
	덕산국	덕산면 도전리	422-2	대	203	13	·
	백은국	백은면 평동리	595-2	학	2,551	185	·
	재전중	재천시 서부동	5 - 1	목조함석	80	320	구내매점
	수산중	수산면 수산리	608-1	대	7,492	1,835	주택부지
수산중	수산면 수산리	609-15	시·벽·함	151.07	231	·	
정원	낭성국	낭성면 이목리	15 - 1	답	7,151	336	농경지
	기암국	낭성면 기암리	251-39	전	1,600	73	·
	용곡국	미원면 용곡리	367-2	답	2,829	160	·
	가덕국	가덕면 병암리	131-5	대	474	26	주택부지
	행정국	가덕면 행정리	29 -1	학	2,145	263	농경지
	상야국	가덕면 상야리	129	답	816	154	·

(단위: ㎡/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정사용료	용도
정원	현도국	현도면 맏계리	583-3	답	513	35	농경지
	부강국	부용면 부강리	505-3	임	784	420	·
	외전국	부용면 외전리	141-1	학	9,224	583	·
	강내국	강내면 태성리	103-2	전	11,366	579	·
	저산국	강내면 저산리	200-1	대	990	52	·
	강외국	강외면 오승리	60-16	학	582	463	주택부지
	공북국	강외면 공북리	산 69	임	3,730	91	농경지
	옥산국	옥산면 오산리	215-4	학	100	67	주택부지
	오창국	오창면 장대리	45	답	4,199	553	농경지
	북이국	북이면 내주리	1 - 5	임	11,994	1,051	·
	석상국	북이면 대둔리	153-5	전	4,960	210	·
	대길국	북이면 서당리	9 - 1	답	721	110	·
	유리국	오창면 화산리	305	·	3,172	290	·
	유리국	오창면 화산리	305	·	35.28	131	주택
	비상국	북이면 비상리	210-1	대	413	20	주택부지
	수성국	북일면 입상리	425-5	답	458	60	농경지
	입등국	북일면 입상리	421-1	학	314	41	수로
	가양분교	미원면 가양리	332	·	8,365	2,509	폐품수집장소
	가양분교	미원면 가양리	332	·	757	1,845	·
	구룡분교	문의면 구룡리	338	·	12,844	6,422	교회
	구룡분교	문의면 구룡리		·	824.4	4,974	교회
	북이국	북이면 내주리		대	1,220	204	주택부지
	내수중	북이면 마산리	1	목조외증	49.59	292	매점
호주국	옥산면 호주리	300-3	시.벽.슬	26.4	80	주택	
보은	교육청	보은읍 정신리	68-4	대	1,276	398	주택부지
	삼산국	보은읍 삼산리	122-2	·	294	500	·
	속리국	외속리면 장내리	265-2	·	1,476	192	·

(단위:㎡/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정사용료	용도
보은	이원분교	내북면 이원리	238-3	대	717	143	주택부지
	관기국	마로면 관기리	338-2	·	929	147	·
	수정국	내송리면삼판리	226	답	3,712	201	농경지
	사직국	탄부면 사직리	151-3	·	160	24	·
	교육청	보은읍 중동리	224-1	·	1,322	108	·
	관기국	마로면 소여리	447-1	·	334	13	·
	삼승국	삼승면 상가리	332	전	2,770	150	·
	이원분교	내북면 이원리	238-3	시·벽·스	35	3	주택
	내북중	내북면 화전리	5-1	·	46.28	185	구내매점
	분저분교	회남면 분저리	71	학	9,461	756	수련장
	분저분교	회남면 분저리	71	시·벽·스	585.7	3,993	수련장
	산대분교	산외면 산대리	118-1	·	14,185	1,349	연수원
	산대분교	산외면 산대리	118-1	·	814	3,751	연수원
	옥천	교육청	옥천읍 상양리	222-217	대	13	234
죽향국		옥천읍 죽향리	235-3	학	149	400	사도
		옥천읍 문정리	83	시·벽·슬	33	340	주택
안남국		안남면 연주리	379-2	학	416	31	주택부지
용촌분교		안내면 용촌리	160	시·벽·슬	28	124	주택
대동분교		안내면 동대리	395-1	학	82.5	20	주택부지
		·	·	·	1,072.5	133	농경지
이원국		이원면 강정리	60-4	대	79	104	주택부지
군서국		군서면 동평리	551	학	473	95	농경지
증약국		군북면 증약리	699-3	답	1,031	150	·
대월국		정산면 대성리	161-2	시·벽·슬	34.38	120	주택
주소분교		군북면 주소리	665	학	9,271	2,019	수련장
		·	·	시·벽·슬	736	4,433	·
정산중		정산면 백운리	333-3	시·벽·스	19.9	163	구내매점
옥천여중		옥천읍 문정리		·	29.6	379	·

(단위: ㎡/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정사용료	용도
영동	용암국	황간면 용암리	670-1	답	5,461	319	농경지
	용산국	용산면 한국리	211	답	1,745	102	·
	주봉령국	주봉령면 주봉령리	404	·	1,528	62	·
	매곡국	매곡면 노천리	49-7	대	44	8	주택부지
			49-5	답	1,170	29	농경지
	상촌국	상촌면 임산리	45-9	전	1,950	52	·
	양강국	양강면 묘동리	315-2	대	25	16	주택부지
	구강국	양강면 구강리	120	답	2,572	123	농경지
	양산국	양산면 가곡리	18-1	·	3,134	297	·
	초강국	심천면 초강리	456-1	대	1,270	199	주택부지
	가선분교	양산면 가선리	152-1	·	2,288	258	노인회관
·			시·벽·슬	202.2	572	·	
전천	상산국	진천읍 읍내리	350-3	학	480	501	주택부지
	학성국	이월면 노원리	465-2	대	653	186	·
			98	답	26,017	4,233	농경지
	매산국	덕산면 산수리	465-1	학	1,200	211	·
	만승국	만승면 광혜원리	486-1	·	99	346	주택부지
	연국분교	진천읍 연국리	191-1	·	5,762	950	연수용
	연국분교	진천읍 연국리	191-1	시·벽·슬	359	810	연수용
	명암분교	백곡면 명암리	216-1	·	2,572	818	수련용
	명암분교	백곡면 명암리	216-1	·	237	1,464	수련용
	백곡중	백곡면 사승리	476-1	대	200	45	주택부지
	진천여중	진천읍 성석리	343	학	294	132	·
괴산	명도국	괴산읍 정용리	508	전	1,666	42	농경지
	등인국	괴산읍 서부리	488	학	116	232	주택부지
	연풍국	연풍면 원풍리	430	답	4,606	185	농경지
	정전국	정전면 정전리	43	전	3,207	260	·

(단위:㎡/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주정사용료	용도
괴산	신월국	정천면 상신리	267-1	전	2,138	100	농경지
	송면국	정천면 삼승리	267-1	학	1,132	226	주택부지
	정안국	정안면 읍내리	575-1	답	5,652	310	농경지
	증평국	증평읍 증평리	1056	학	143	354	주택부지
	삼포국	증평읍 초중리	11-19	·	66	231	·
	무도국	불정면 묵도리	290	전	495	165	농경지
	광신국	소수면 몽촌리	225	학	293	58	주택부지
	교육청	괴산읍 서무리	312	대	648	1,063	·
		괴산읍 대사리	206-1	답	376	24	농경지
음성	수봉국	음성읍 읍내리	211-5	학	80	260	주택부지
		음성읍 감우리	440-1	답	903	29	농경지
	덕생국	음성읍 삼생리	19-1	전	5,308	252	·
	쌍봉국	금왕읍 본대리	218-2	대	304	63	주택부지
	소이국	소이면 금그리	68-1	학	1,363	388	·
	맹동국	맹동면 두석리	41-1	임	397	15	·
		·	41-5	·	8,444	317	농경지
	부운국	대소면 부운리	393	대	100	23	주택부지
	생극국	생극면 산양리	798	답	2,980	537	농경지
	오생국	생극면 생리	748-1	임	8,055	1,584	·
	감곡국	감곡면 오향리	489-2	대	362	174	주택부지
	무곡국	금왕읍 무곡리	80-12	대	743	738	·
	무곡국	·	산25-1	임	3,265	244	농경지
	무곡중	·	53	전	33,470	4,012	·
	충도분교	소이면 충도리	704	학	7,203	1,261	입시학원
	남신국	음성읍 읍내리	757-6	·	3,136	348	농경지
도서권	·	209	철·콘·승	33.3	215	매정	
충도분교	소이면 충도리	704	시·벽·승	780.7	2,670	입시학원	

(단위: ㎡/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추정 사용료	용도
음성	감곡중	감곡면 오항리	815-1	답	4,047	403	농경지
단양	교육청	단성면 상방리	72-2	전	10,856	58	농경지
	금곡국	단양읍 기촌리	107	대	3,366	204	주택부지
	의풍국	영춘면 의풍리	760	·	316	18	·
	노동국	단양읍 노동리	262-7	학	1,018	108	·
	가곡국	가곡국 사평리	468	·	202	46	·
	어상전국	어상전 임현리	462-4	대	215	49	·
	대강국	대강면 장림리	94-10	전	132	49	·
	황정분교	대강면 황정리	211	답	2,106	57	농경지
	장정분교	대강면 장정리	30	학	850	50	주택부지
	영춘국	영춘면 상리	416	대	138	103	·
	기동분교	적성면 기동리	442	전	4,065	59	·
	두항분교	단성면 두항리	39	학	11,969	180	·
	방곡분교	대강면 방곡리	156	·	8,144	274	·
	울산분교	대강면 울산리	185	·	10,171	232	·
	사지원분교	영춘면 사지원리	64-1	·	4,975	48	·
	덕문국분교	어상전면 덕문국리	170	·	28,840	241	·
	연국분교	어상전면 연국리	631	·	11,065	141	·
	향산분교	가곡면 기동리	347-4	·	4,371	98	·
	기동분교	적성면 기동리	443-1	시·벽·스	381.19	1,766	수련원
	두항분교	단성면 두항리	39	·	829.45	2,396	·
	방곡분교	대강면 방곡리	156	시·벽·슬	386.97	1,166	·
	울산분교	대강면 울산리	185	시·벽·스	365.92	971	·
	사지원분교	영춘면 사지원리	64-1	시·벽·슬	360.72	2,231	·
	덕문국분교	어상전면 덕문국리	170	·	1,097.72	2,022	·
	연국분교	어상전면 연국리	631	·	786.82	4,134	·
	향산분교	가곡면 향산리	347-4	·	435.34	627	·
	매포중	매포읍 평동리	118	시·벽·스	41.02	465	구내매점

'93. 기관별 무상사용허가 내역

(단위:㎡/천원)

구분	기관(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용도	비고
본청	본청	강내면 다락리	산 7	철.콘.슬	3,689.52	기숙사	고원대
		옥천읍 금구리	39-6	도	302	전입로	옥천군
충주	교육청	충주시 성내동	181-1	대	270	문화회관 광장	충주시
제천	과국분교	수산면 원대리	137	학	11,087	수련원	제천군
		· ·		연와조	479.34	·	·
청원	교육청	강내면 월곡리	230	학	62,136	고원대부속 월곡국교	고원대
		·		철.콘.슬	1,976.64	·	·
		옥산면 가락리	764-47	대	1,140	옥산지서	경찰청
		부강면 부강리	412-6	·	113	부강지서	·
		강내면 탐연리	156-1	전	2,192	강내지서	·
미원면 미원리	536-6	대	2,274	미원지서	·		
보은	법수분교	회남면 법수리	43	학	7,099	고원대학교 학생교직원 연수	고원대
		·		철.콘.슬	825.1	·	·
	도서관	보은읍 장신리	67-1	시.벽.슬	100	보은문화원 임시사무실	보은군
옥천	본청	정산면 지전리	32-1	전	1,927	정산면민회 관,보건소 부지	정산면

(별첨 4)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2.12.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년월일 : 1992. 12.

제출지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도유(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물량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유(교육)재산의 관리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기관 : 지역교육청

나. 변경내역

1) 취득

(단위: m²/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178,494.1	27,805,438	178,657.1	27,805,608	163	170
건 물	58,958.02	22,548,004	59,178.02	22,628,754	220	80,750
공작물	3 식	105,500	3 식	105,500		
계	237,452.12 (3)	50,458,942	237,835.12 (3)	50,539,862	383	80,920

2) 처분

(단위: m²/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430,352.8	5,193,156	433,002.8	5,211,939	2,650	18,783
건 물	39,056.48	2,967,320	39,200.28	2,971,798	143.8	4,478
공작물	38 식	59,222	38 식	59,222		
계	469,409.28 (38)	8,219,698	472,203.08 (38)	8,242,959	2,793.8	23,261

3) 유상사용허가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517,239.38	98,738	517,239.38	98,738		
건 물	12,672.59	47,414	12,672.59	47,414		
계	529,911.97	146,152	529,911.97	146,152		

4) 무상사용허가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91,022		91,022			
건 물	6,979.96		6,979.96			
계	98,001.96		98,001.96			

3. 제안 근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4. '92.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 불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역

기. 취득

(단위 : ㎡/천원)

교육청	구분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취득금액	시유	비고
음성	토지	오감국	기부채납	감곡면 오공리 135-4	전	68	65	증여 (현 운동장)	
				감곡면 오공리 10-4	과	95	105	증여 (현 진입로)	
	소계			2필지		163	170		
진천	건물	상신국	사택개축	진천읍 음내리 357-1	시.벽.술	53	28,754	92.시설사업계획(추경)	
				초평면 금곡리 593	조림식판널	115	22,300		
				이월면 송림리 455-5	시.벽.술	25	14,696		
				진천읍 성석리 462		27	15,000		
소계			4동		220	80,750			
계									
						383	80,920		

나. 처분

교육청	구분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취득금액	시유	비고
청원	토지	만수국공북본고	본용지매각	강외면 공북리 산69-1	임	1,909	13,405	고속전철 편입	
				초평면 금곡리 600-1 외 3필지	학	741	5,378	초평-홍동간 도로 편입	
음성	소계	부원국	교실 2실철거	4필지		2,650	18,783		
				대소면 부원리 392	벽돌조기외	143.8	4,478	노후	
계									
						2,793.8	23,261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 5)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가분)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2.12. .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8-3
----------	------

제출년월일 : 1992.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도유(교육)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취득, 처분 물량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유(교육)재산의 관리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상기관 : 본청 및 지역교육청

나. 변경내역

1) 취득

(단위:㎡/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178,494.1	27,805,438	178,657.1	27,805,608	163	170
건 물	58,958.02	22,548,004	59,178.02	22,628,754	220	80,750
공작물	3 식	105,500	3 식	105,500		
계	237,452.12 (3)	50,458,942	237,835.12 (3)	50,539,862	383	80,920

2) 처분

(단위:㎡/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430,352.8	5,193,156	434,061.8	5,354,374	3,709	161,218
건 물	39,056.48	2,967,320	39,200.28	2,971,798	143.8	4,478
공작물	38 식	59,222	38 식	59,222		
계	469,409.28 (38)	8,219,698	473,262.08 (38)	8,385,394	3,852.8	165,696

3) 유상사용허가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517,239.38	98,738	517,239.38	98,738		
건 물	12,672.59	47,414	12,672.59	47,414		
계	529,911.97	146,152	529,911.97	146,152		

4) 무상사용허가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토 지	91,022		91,022			
건 물	6,979.96		6,979.96			
계	98,001.96		98,001.96			

3. 제 안 근 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4. '92.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 : 불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임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역

가.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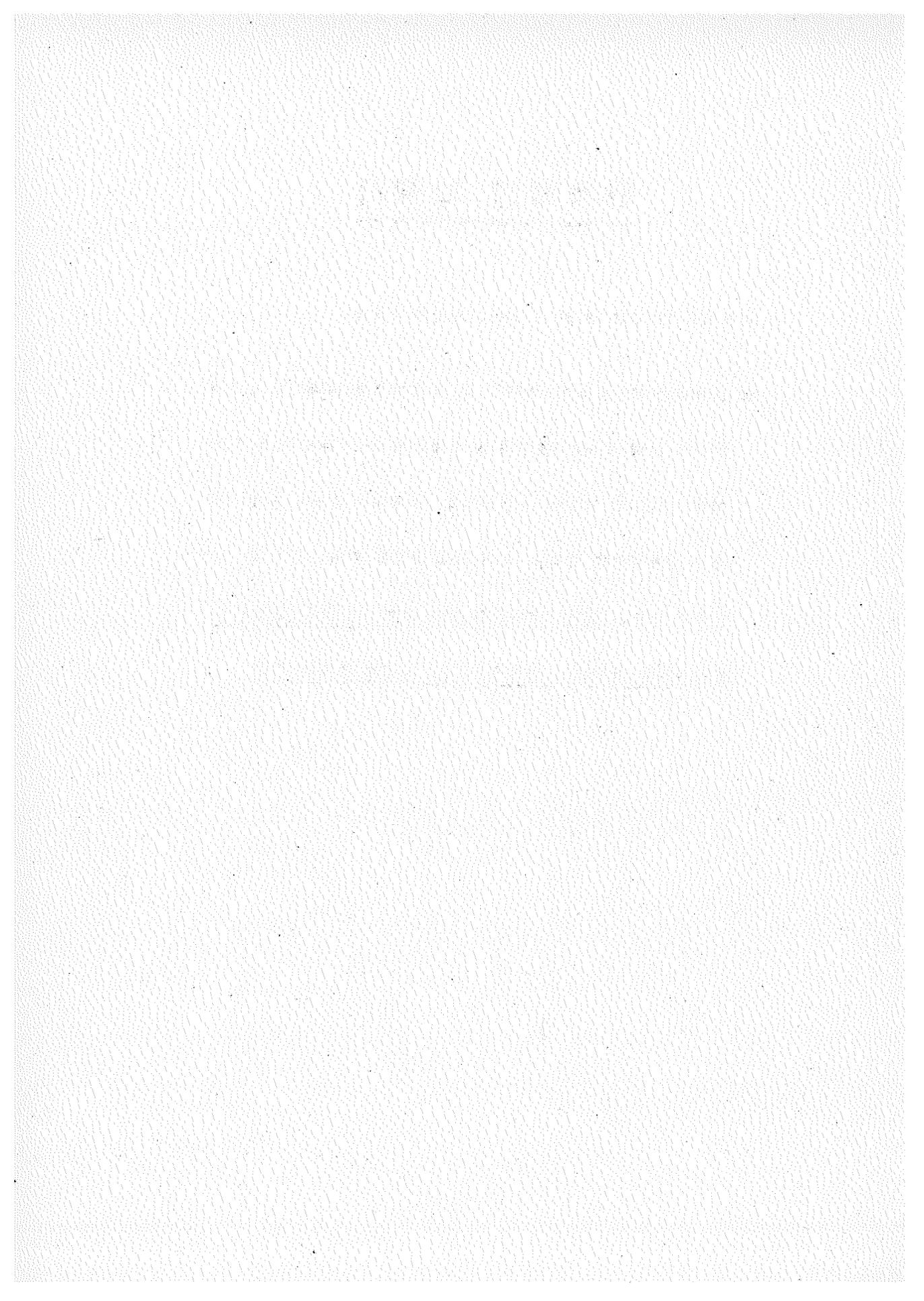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교육정	구분	기관명	사업명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처분 예정금액	사유	비고
본정	토지	광혜원고	불용토지 매각	만승면 광혜원리 520	학	1,059	142,435	만승지구 택지개발사업 도로편입	

관계 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 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별첨 6)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의 번	안 호	18-4
--------	--------	------

제출년월일 : 1992. 12.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편성한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5992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공산공고 실습실 증축비 1억 8139만 5천원, 중평공고 실습실 증축비 7852만 5천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92년도 충청북도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예산안 : 불 임

4. 예산편성 참고자료

o 사항별 설명서 : 불 임

(별첨 7)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충청북도 교육청

예 산 증 칙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세입·세출 각각 371,537,555,000원으로 한다.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u>세</u>	<u>입</u>
금 371,537,555,000원정	

<u>세</u>	<u>출</u>
금 371,537,555,000원정	

세입·세출차인잔액어음

표
계
집
별
간

1. 세 입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고증감	비고
1. 재	산 수입	1,909,500	1,909,500	0	
2. 사	용료및수수료	26,984,029	26,984,029	0	
3. 실	습수입	867,439	867,439	0	
4. 지	방교육재정교부금	264,260,655	264,260,655	0	
5. 지	방교육항여금	57,628,000	57,628,000	0	
6. 보	조금	3,152,722	2,892,802	259,920	
7. 기	부금	1	1	0	
8. 과	년도수입	2,250	2,250	0	
9. 전	입금	841,517	841,517	0	
10. 지	방교육채	1	1	0	
11. 잡	수입	1,851,127	1,851,127	0	
12. 이	월금	14,040,314	14,040,314	0	
세	입합계	371,537,555	371,277,635	259,920	

2. 세 출
가. 증 광

(단위:천원)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1. 교육위원회	비	390,014	390,014	0	
2. 교육행정	비	20,771,062	20,771,062	0	
3. 교육시업	비	5,766,485	5,766,485	0	
4. 학교	비	295,778,566	295,778,566	0	
5. 시설	비	30,799,625	30,539,705	259,920	
6. 교육환경개선	비	14,045,618	14,045,618	0	
7. 과년도지출	출	7	7	0	
8. 전출금	금	0	0	0	
9. 상환금	금	35,384	35,384	0	
10. 자치단체에 대한교부금	금	0	0	0	
11. 예비비	비	3,950,794	3,950,794	0	
합	계	371,537,555	371,277,635	259,920	

나. 편 정

(단위:천원)

관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 고 증 감	비 고
1. 고 육 위 원 회	비	390,014	390,014	0	
2. 고 육 행 정	비	10,728,685	10,728,685	0	
3. 고 육 시 업	비	4,135,245	4,135,245	0	
4. 학 고	비	74,655,341	74,655,341	0	
5. 시 실	비	11,187,071	10,927,151	259,920	
6. 고 육 환 경 개 선	비	3,106,323	3,106,323	0	
7. 과 년 도 지 출		0	0	0	
8. 전 출	금	0	0	0	
9. 상 환	금	35,384	35,384	0	
10. 자치 단체 에 대한 기부금		0	0	0	
11. 예 비	비	0	0	0	
합	계	104,238,063	103,978,143	259,920	

장 (권) 별 예 산

세 명

(단위:천원)

관	과	항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
6. 보		조	금	3,152,722	2,892,802	259,920		
	1. 보	조	금	3,063,822	2,803,902	259,920		
세	일	합	계	371,537,555	371,277,635	259,920		

세 출

(단위:천원)

장	관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 고 증 감	비 고
		항	세 항				
1.	본	정		104,238,063	103,978,143	259,920	
	5.	시	비	11,187,071	10,927,151	259,920	
		1.	고 시 실	9,524,493	9,264,573	259,920	
			1. 고 등 학 교 시 실	8,564,153	8,304,233	259,920	
	합	계		371,537,555	377,277,635	259,920	

(별첨 8)

19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사 항 별 설 명 서

과
야
다
나
과
과
과

세 입

(단위:천원)

과 목	수정예산(요구)액	당초예산(요구)액		금회요구액	실 영 사 행
		기정예산액	제외회주경요구액		
합 계	371,537,555	370,192,009	1,085,626	259,920	
5. 보 조 금	3,152,722	2,340,441	552,361	259,920	
1. 보 조 금	3,063,822	2,251,541	552,361	259,920	0 직업교육확충사업비 국고보조금 (실업 25330-476 : '92.12. 3)

세 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	과 목			수 경 예산(요구)액	당초예산(요구)액		금회요구액	설 명 사 령
		장	관	항		기정예산액	제2회추가경 요 구 액		
		합 계			371,537,555	370,192,009	1,085,626	259,920	
		부			104,238,063	103,532,998	445,145	259,920	
과 학	직업교육확충	장	관	항	3,261,932	2,526,777	475,235	259,920	
기술과		장	관	항	261,201	185,801	75,40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국고모조사업 o 산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확충을 위하여 실습실을 확보하여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
		장	관	항	3,000,731	2,340,976	399,835	259,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경비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신공고 실습실 : 386㎡ 181,395 중평공고 실습실 : 167㎡ 78,525

명 시 이 문 를 조 서

(단위:천원)

과	목			이 월 액	시	주										
	권	항	세 항				목									
보 정	시 설 비	학 교 시 설	고 등 학 교 시 설	259,920		○ 고교체제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교육부정권으로부터 '92.12.3. 보조결정되어 '92회계년도 중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함. ○ 사업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학 교 명</th> <th>문 립</th> <th>이 월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광신중고</td> <td>386㎡</td> <td>181,395</td> <td>실습실</td> </tr> <tr> <td>중원중고</td> <td>167㎡</td> <td>78,525</td> <td>실습실</td> </tr> <tr> <td>계</td> <td>553㎡</td> <td>259,920</td> <td></td> </tr> </tbody> </table>	학 교 명	문 립	이 월 액	비 고	광신중고	386㎡	181,395	실습실	중원중고
학 교 명	문 립	이 월 액	비 고													
광신중고	386㎡	181,395	실습실													
중원중고	167㎡	78,525	실습실													
계	553㎡	259,920														

(별첨 9)

1992. 12. 1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인력진단 실시 결과의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진단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지역교육청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조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진단 실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① '92.5.20부터 5일간 개최된 제10회 임시회에서
권혁풍위원님의 "인력감사의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정관리담당관의 답변이 있었고,

② 제11회 임시회시 권혁풍위원님이 "인력감사를 실시 할 것인가?
실시한다면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질문에 대하여
『인력진단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준비중에 있다는
부교육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③ 또한 제13회 임시회시 김광수 부의장님의
"시·군교육청 일반직 인사담당자 개선 용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④ 제12회, 제14회 임시회 및 제16회 정기회 제2차 감사소위원회에서 권혁풍위원님의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에 대하여, 인력진단 실시 종료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진단 실시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교육청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6쪽의 일반직공무원 진단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3.3.1 이후부터는 교원 인사업무를 교육전문직이 전담하되 현재의 6급 인사담당자의 직급을 7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학무과에 배치함으로써 인사 및 일반사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업무추진 상황을

첫째, 교원 인사업무가 처리되어 온 현황과,
둘째, 교원 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
셋째, 설문조사 실시 내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 인사업무가 처리되어 온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원 인사업무는 『교원인사 사무분장에 대한 지침』에 의하여
'85.6.1 이후부터 행정 6급 1명이 초·중등교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통합 담당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교원 인사사무에 일반직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으며,
현재에도 타 시·도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이후 교육전문직은 복잡한 수치를 처리하는 일이나
단순한 서식기재 등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만, 교원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만 참여하는 형태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업무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국장과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전문직과,
현재 이를 담당하는 일반직의 의견을 회의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수렴하였고,

본청에 『인력진단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 하였으며,
동 조정작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무과장, 초·중등교육계장 각 1명, 국·중학교 교감 및 교사 각 5명, 인사담당자 1명씩 모두 154명을 무작위표출하여,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설문지를 배포·수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사결과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순수 장학업무 이외에 교원인사업무도 관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부분 이었으며 (응답자의 57%),
둘째, 교원 인사업무는 교육전문직이 전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2%)

셋째, 현행제도에 대한 불만의 원인으로서는,
교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이 미흡하다는 견해 (47% 응답)와,
일반적이 교원신상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다는 자체 (45% 응답)를 불만요인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제도를 평가해 볼 때,
교원의 입장에서는 일반직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불만요인이 상존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일반직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외감으로 인하여 보임 기피현상 등의
사기 저하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현행 제도는 교원과 일반직 모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결과 교원 인사사무는 교육전문직이 전담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반직을 감축할 경우 교육전문직의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 6급 대신 행정 7급 1명을 배정함으로써,
학무행정의 계속성 있는 체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력진단 실시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진단의 목적과 기본방향, 진단대상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인력진단을 위하여 추진해온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에,

인력진단 실시결과에의 분석으로써

첫째, 정원현황을 말씀드리고

둘째, 각 기관단위로 자체 실시한 「1차 진단」 결과를

셋째, 직급별, 기관별로 현장조사에 의해 실시한 「2차 진단」 결과를

그리고, 진단결과에의 사후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진단의 목적은

지난해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정후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한 행정력을 제고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단의 기본방향은

첫째, 부서별, 담당자별 연간 업무량을 조사하여 진단하되 현장 실사를 병행하고,

둘째, 소요정원 산정시 그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판단하여 현 정원의 적정여부를 진단하며,

셋째, 신규 수요분야는 조직내에서 기능의 중요성이 감퇴하거나 행정수요가 감소한 부서의 인력을 상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두었습니다.

진단대상 기관과 분야로는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 직급별로 진단하였고,

조직 및 사무분야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개편이 예정되므로 진단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진단을 위한 업무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18 인력진단 실시계획을 수립, 실무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1 부터 2개월에 걸쳐 1차 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기관별·부서별로 개인별 업무추진 실적 및 연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2차 진단은 9.10부터 11.10까지 현장조사에 의한 사실확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편, 지역교육청의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고,

11월 중순부터 1개월여에 걸쳐, 1·2차 진단결과 및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2차에 걸친 "인력진단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진단의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정원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등 행정기관에는
현재 교육전문직 209명, 일반직 441명, 기능직 330명, 별정직 14명 등
모두 994명의 정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정원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충북과 도세가 비슷한 시·도가 없어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없으나,
학교수·학생수·교원수 등이 우리 도보다 다소 많은
강원, 충남, 전북교육청과 비교할 경우 교육전문직은 4-11명,
일반직의 경우 7-15명, 기능직은 8-33명이 각각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자체진단한 1차 진단 결과입니다.

연간 업무처리 소요일수를 살펴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계장 이상을 제외한 직원들의
연간 업무처리 소요일수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 ① 교육위원회의 경우 388 일
- ② 도교육청은 290 일
- ③ 직속기관은 305 일
- ④ 11개 지역교육청의 경우 332 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연간 근무일수를 280일로 추정할 때 모든 기관들이 정상 근무일수를 초과하고 있어, 직원들은 야근 또는 특근을 통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자료는,

- ① 조사 대상기관의 자체 분석자료이며,
- ② 같은 단위업무라도 처리 소요시간을 각각 다르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 ③ 계 단위로 분석하였으므로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별 분석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직, 별정직,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순으로 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진단결과의 대강만을 말씀드리고 단위 기관별·부서별 진단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전문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제개편 이후 증원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되었으므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결단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특수학교 7개교에 135개의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관장하는 전문인력은 3명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2명 정도의 전문직을 증원하여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진흥을 도모하고,

심신장애자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청됩니다.

또한, 도교육청 관내에 공립유치원 365학급, 사립유치원 242학급,

새마을유아원 104학급 등 711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도 및 지역교육청에

4명의 보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학교 컴퓨터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도교육청에 2명, 과학교육원에 1명뿐이므로,

도 교육청과 과학교육원에 컴퓨터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를 전담할 교육전문직 1명씩의 보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방송 활용의 일반화를 도모하고 교육방송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교육방송 담당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단 1명의 전문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전담 인력의 배치가 요청됩니다.

특히 재천, 영동, 음성야영장의 장장(場長)인 교육연구사와 종합야영장의 연수부장 및 학생회관의 운영부장인 교육연구관은 조례상에 보직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해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밖에도,

- ①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담당 장학사 1명,
- ② 중등장학과에 장학담당,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각 1명
- ③ 초등·중등교직과에 인사담당 장학사 각 1명
- ④ 과학기술과에 과학담당 장학사 1명
- 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이동과학차 증설에 따른 연구사 1명 등의 추가 정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여 보면

장학관 2명, 교육연구관 3명, 장학사 37명, 연구사 10명 등 모두 52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인력부족 현상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단지원 행정의 저해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난 4. 4 교육전문직 51명의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93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정원배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의 비상계획담당관과 단재교육원, 종합야영장
그리고 7개의 간이 학생야영장에 학생수련요원 12명 등
총 14명의 별정직공무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난 7월 28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안연구관인 별정 5급상당 1명의 증원이 요청되며,
이를 '92.8.18일 교육부에 요구하였습니다.

'92년 6월 개장한 음성 조촌·통동야영장의 경우
현재 기능직 2명만이 배정되어 정상적인 수련활동에 지장이 많으므로
학생 수련요원 2명의 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간이학생야영장 수련요원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입니다.
야영장의 별정직공무원은 학생수련이라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므로

이들의 직급을 현행 8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무의욕을 높이고 사명감을 고취시킴은 물론
수련활동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직급 상향조정 대상은 야영장 규모가 비교적 크고
연간 수련인원이 9,000-13,000명에 이르는 3개 야영장 입니다.

참고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보면,

6급상당의 경우

-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대위 또는 중위인 자
- 학사학위 소지자

8급상당의 경우는,

- 대학생 일반군사교육요원 경력소지자로서 전역 하사관 또는 병인 자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진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의 직급 하향조정 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정 6급이 담당하고 있는 교원 인사업무를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 업무를 교육전문직이 담당하고
행정 6급을 7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학무과에 배치함으로써
인사 및 일반사무를 보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학급이하 소규모 국민학교의
사무직원 배치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누차에 걸쳐 제기된 사항으로서
그 필요성에 비추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12개의 국민학교중 7학급이상 141개교에는 모두 배치 완료하였고
6학급이하 171개교중 168개교는 미배치 하였으며,
그 중 향후 4년간 분교장 격하대상교 56개교를 제외하면
모두 112개교에 사무직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라 하더라도 7학급 이상의 학교와 업무량이 대동소이하며
또한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배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상학교에 모두 배치할 경우 연 13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며
타 시·도의 경우도 6학급이하의 국민학교에는
현재까지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전면 배치는 고려하기 어렵지만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연차별 배치 계획 수립이 조속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과 과학고등학교 사무과의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과학교육원장이 과학고등학교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또한
양 기관이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합운영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나,
과학교육원의 이전계획안이 확정되면 현행대로 분리운영이 불가피하므로
통합을 유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적의 경우

도교육청에 3명, 직속기관 및 과학고등학교에 4명이 있으나,
전산업무와 관련이 적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정원을 도교육청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폭증하는 전산업무 처리량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요증대에 대응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업계고등학교 전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고에 7명의 전기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바,

그들 대부분은 급여업무와 재산, 물품, 문서, 보안업무 등
행정분야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 일부를 지역교육청으로 전환 배치하여

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독과 관내 학교의 전기시설을 관리케 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됩니다.

한편, 도서관 사용료 징수가 폐지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1일 평균 이용자가 250-400명에 이르는 일부 지역도서관에
사서직원의 증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수영장의 경우

청주교육장에게 관리·운영에 관한 감독권을 권한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충북체육고등학교가 동일 구역에 건립되는 관계로

체육고등학교장에게 수영장장을 겸임토록 하여

동 수영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회관의 경우 총무과에 서무계, 관리계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과업무의 성격내지 업무량에 비추어 제조적의 필요성이 적다고 진단되며,

또한, 다른 직속기관 조직과의 불균형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진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숙직근무에 따른 기능직 증원문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2.10.5 제정·공포된 『초·중등학교당직근무규칙』에 의거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당직전담 기능직이 배치된 국민학교와 같이

기능직공무원이 숙직을 전담함에 따라 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원 숙직근무 면제의 근본 취지에는 물론 찬동하지만

대안의 마련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하여

수차례 보도되고 단체행동의 우려도 예상됩니다.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40개 학교에 기능직 추가배정이

요청되고 있으나 이는,

- ① 교육부장관의 승인사항일 뿐만 아니라
- ② 국민학교 정원과의 불균형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 ③ 또한 증원시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인 증원계획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학생야영장의 기능직 증원 문제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우리와 같은 규모에 5-8명의 직원이 배치된데 반하여,
우리 도의 경우 연구사, 별정직, 기능직 각 1명씩 3명밖에 없어
학생들의 야영과 수련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현재의 인력이 부족하므로

7개 간이 야영장중 수련실적이 많은 3개 야영장에
기능직 각 1명씩의 증원이 요청됩니다.

또한, 직명과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 직렬을 변경하여
정원관리상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경우

조례상의 정원인 사무보조 및 운전원의 증원이 불가피하고,
충북수영장의 수영지도요원 확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고등학교 전기직 일부를 지역교육청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학교의 전기시설 관리를 위하여 기능직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도교육청과 일부 직속기관의 기능직 정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재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경우
인력을 감축 운영할 수 있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진단결과의 사후조치로써,

- ①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야 하며,
- ② 교육부에 정원요구 및 정원의 자체책정과 조정이 뒤따라야 하고,
- ③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력진단 실시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만, 실시 전에 예상한 바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업무의 특성상 이를 표준화, 계량화, 객관화 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며, 단위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가 적정하고, 현재 배치된 인력이 주어진 업무처리에 적정한 인원인가? 등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위기관별, 부서별 적정인원 산정이 참으로 곤란하며, 따라서 진단결과의 신뢰성,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유는,

인력진단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며, 진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력의 부족,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셋째로,

공무원의 수는 날로 증가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증원 요구한 인원이

교육전문직 58명, 일반직·기능직 및 별정직 76명 등

모두 134명에 달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을 감축하여 달라는 요구는 없는 반면,

인력이 부족하므로 더 배정하여 달라는 요청 뿐이므로

기존의 정원을 감축 운영함에는 많은 저항과 갈등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 조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신규 수요분야는

조직내에서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부서의 인력을 상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계속하여

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교단지원을 위한 인력배치는 신속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

그 동안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력 제고의 측면에서
집행기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생각하나,
그 결과가 여러 위원님들의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0)

1992. 12. 1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요 약)

충청북도교육청

인력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요약)

I. 배 경

II. 목 적 : 인력의 합리적 조정 배분, 행정능률의 극대화 도모

III. 기본방향

1. 기관별, 부서별 현 정원의 적정여부 진단
2. 신규 수요분야 : 수요 감소분야 인력 상계활용, 인력증원 억제

IV. 진단대상

1. 기 관 : 교위,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2. 분 야 : 인력 (조직 및 사무분장 제외)

V. 인력진단을 위한 업무 추진과정

1. 인력진단 실시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실시
2. 1차진단 : 기관별, 부서별 자체진단
3. 2차진단 : 현장조사에 의한 확인 및 의견수렴
4. 교원인사 사무분장 조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5. 『인력진단실무위원회』 운영
6. 인력진단 종합보고서 작성

V. 1차 진단 실시결과 분석

1. 현재의 정원

구분	현정원					비고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	
교육위원회		6	4		10	
도교육청	48	127	74	2	251	
직속기관	48	79	147	12	286	
지역교육청	113	229	105		447	
계	209	441	330	14	994	

2. 타 시·도교육청과의 비교 (도교육청)

정원 시·도명	총계	교육 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일반현황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충북	251	48	127	74	2	495	289,671	12,141
충남	300	57	140	100	3	818	402,026	17,748
전북	305	55	142	107	1	837	451,910	19,709
강원	272	52	136	82	2	1,007	335,296	15,988
대전	227	46	115	64	2	175	244,005	8,029

3. 업무추진 현황

구분 기관명	정원	문 서 생 산			업무처리 소요시간			출 장 일 수		
		계	자 체 생 산	요 구 기 관 회 신	연 간	1인 당	소요 일수	계	관 내	관 외
교육 위원회	7	366	278	88	21,754	3,108	388	484	186	298
도교육 청	199	9,382	3,946	5,436	430,394	2,163	290	12,018	5,948	6,070
직 속 기관	246	6,802	2,740	4,062	600,375	2,440	305	5,289	2,244	3,045
지 역 교육청	359	51,263	12,336	38,927	954,642	2,659	332	23,359	14,384	8,975
합 계	811	67,813	19,300	48,513	2,007,165	2,475	309	41,150	22,762	18,388

Ⅶ. 직급별·기관별 진단 개요

1. 교육전문직

- 특수교육 : 장학관 1 (초등장학과), 장학사 1 (충주)
- 유아교육 : 장학사 4 (초등장학과, 청주, 진천, 단양)
- 컴퓨터교육 : 과학기술과 및 과학교육원에 전산담당부서 신설
 - 도교육청 : 장학관 1, 장학사 2
 - 과학교육원 : 연구관 1, 연구사 2
 - 지역교육청 : 장학사 11 (합계 17명)
- 교육방송 : 교육방송 전담인력 배치
 - 도교육청 : 장학사 2 (초·중등장학과)
 - 과학교육원 : 연구사 1
 - 지역교육청 : 장학사 11 (합계 17명)
- 간이야영장 : 연구사 3 (재천, 영동, 음성)
- 종합야영장 : 연구관 1, 연구사 1
- 학생회관 : 연구관 1, 연구사 2
- 도교육청 : 장학사 6 (감사계, 중등장학, 생활지도, 초등인사, 중등인사, 과학담당)
- 과학교육원 : 연구사 1 (이동과학차)

(소요정원 총괄)

- 장학관 2, 연구관 3, 장학사 37, 연구사 10, 계 52 명

2. 별정직 공무원

- 현 보유정원 : 14명
- 교육위원회 : 별정 5급상당 1 (의안담당관)
- 음성야영장 : 별정 8급상당 2 (조춘·봉동)
- 증원·육천·정천야영장. 별정 8급상당 → 6급상당

(증감내역 총괄)

- 별정 5급상당 증 1 (교육위원회)
- 별정 8급상당 증 2 (음성야영장)

3. 일반직공무원

-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 직급 하향 조정
 - 행정 6급 11 → 행정 7급
- 6학급이하 소규모학교 사무직원 배치문제 검토
 - 단계적 배치 신중 검토 필요
- 과학교육원과 과학고 사무과 통합운영 검토 - 유보
- 직속기관 전산직의 도교육청 통합운영 (4명중 2명)
 - 교육연구원, 과학고 전산 7급 $\Delta 2$ → 도교육청
- 공업고등학교 전기직의 지역교육청 배치 (7명중 2명)
 - [단양공고, 광혜원고 전기 7급 $\Delta 2$ → 청주·제천교육청
 - [단양공고, 광혜원고 기능직 (전기) 7등급 2명 배치
- 지역도서관 사무직원 증원
 - 학무과장이 도서관장을 겸임하는 도서관 : 충주, 보은, 영등, 괴산
 - 행정 6급 1 (충주 도서관장)
 - 사서 8급 3 (옥천, 진천, 음성도서관)
- 충북수영장 관리운영권의 합리적 조정
 - 충북체육고등학교장에게 수영장장 겸임.
 - 행정 6급 1 → 행정 7급
 - 기능직 9등급 1 증원 (수영지도요원)
- 학생회관 : 총무과의 사무계, 관리계 폐지
 - 행정 6급 $\Delta 1$ → 청주교육청 (관계계장)

(증감내역 총괄)

- 행정 6급 증 1 (충주도서관)
- 행정 7급 증 1 (교육위원회)

4. 기능직공무원

- 중·고등학교 당직근무와 관련한 기능직 증원문제 (40명)
 - 연차적으로 증원계획 수립 필요
- 수련활동이 많은 간이야영장에 조무원 증원
 - 조무원 3 (증원, 청천, 옥천)
 - 타 시·도의 간이야영장 정원 : 5-8명 (본도 3명)
- 기능직 직렬을 실제 담당업무 직렬로 변경
 - 방호원 3 → 조무원
 - 기계원 7 → 난방원 (특별임용시 자격증 같음)
- 교육위원회 : 속기사 1, 운전원 1
- 충북수영장 : 조무원 1 (수영지도원)
- 단양공고, 광혜원고 : 전기장 2
- 도교육청 : 운전원 Δ 1 → 과학교육원 (이동과학차 증설)
- 증양도서관 : 조무원 Δ 4 (현정원 31명)
- 학생회관 : 조무원 Δ 3 (현정원 19명, 미배치 3명)
- 교육연구원 : 조무원 1
- (추가 소요부서) : 조무원 2

(증감내역 총괄)

- 전 기 장 2 (단양공고, 광혜원고)
- 사무보조원 1 (교육위원회)
- 운 전 원 1 (교육위원회)